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21-32호

2021년 7월 29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5357호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58호	2022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59호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60호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61호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62호	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63호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64호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65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66호	전라남도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67호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68호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69호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70호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71호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72호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73호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74호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75호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76호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77호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78호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79호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80호	전라남도 산림박물관 운영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81호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82호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383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384호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385호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386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규 칙

- 전라남도 규칙 제3262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훈 령

- 전라남도 훈령 제1452호 지방공사 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장 연봉재심위원회 운영지침 폐지훈령
- 전라남도 훈령 제1453호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담당제 운영규정 폐지 훈령

◆ 고 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45호 제3중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46호 해남군 우수영항 잔입도로 확장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47호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48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0호 영산강 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4구간)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1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2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사업계획 변경 고시

◆ 공 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764호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770호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 시군행정

- 목포시 고시 제2021-11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목포가톨릭대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목포시 고시 제2021-119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3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목포시 고시 제2021-12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고하도유원지휴양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1-331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1-33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 변경 고시

순천시 고시 제2021-148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순천시 고시 제2021-152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507, 소로3-50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공고 제2021-1750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호선, 대로3-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광양시 고시 제2021-280호	다압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신가~외압간 농로) 시행계획(변경) 고시
함평군 고시 제2021-86호	함평 군관리계획(시장)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58호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57호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로 한다.

제5조 중 “하되, 두 차례만 재위촉 할 수 있다” 를 “한다.” 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야기한” 을 “일으킨” 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58호

2022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22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를 “제28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2022년에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 을 “제28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으로 한다.

제2조 중 “UN기후변화협약” 을 “제28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22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 를 “제28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로 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 “2020 UN” 을 “제28차 유엔(UN)”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59호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돌보미”란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각종 기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방향
2.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
3. 스마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관련 전문 지식이나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법인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4.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 도지사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 건강안전알림서비스
3. 의료지원서비스
4. 위치알림서비스
5. 그 밖에 돌봄 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돌봄서비스 협의회)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나 시설·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돌봄서비스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돌보미 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라남도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돌봄서비스로 본다.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60호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라남도 노인교육” 을 “노인교육” 으
로,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를 “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와” 로, “기
여함” 을 “기여하는 것”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 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 범위) 노인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중전의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
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을 “노인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이 필요로 하는”
으로, “노력한다” 를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교
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시행)” 을 “(노인교육 실시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사는” 을 “도지사는 체계적인 노인교육을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로, “매년 수

립하고 시행한다” 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전라남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인교육 기반 구축
3.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관련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5. 노인교육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 제목 “(노인교육 사업)” 을 “(노인교육 관련 사업)” 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시 및 정보” 를 “관련 정보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문인력” 을 “전문인력의” 로, “연수, 파견 사업” 을 “연수·파견”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개발 사업” 을 “개발”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행사 개최” 를 “행사”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노인교육의” 를 “노인교육” 으로, “필요한” 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으로 한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제7조제1항 중 “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심의와” 를 “도지사는” 으로, “지원·협력” 을 “지원과 협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되” 를 “구성하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라” 를 ““도” 라” 로,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 교육청 소속 노인교육 관련부서” 를 “전라남도교육청의 노인교육 관련 부서”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련기관·단체” 를 “관련 기관·단체의”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 등” 을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 를 “협의회의” 로,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를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 을 “(사무의 위탁)”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도 누리집 등을 통해 노인교육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 중 “정할 수 있다” 를 “정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61호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중단”이란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고용중단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2. 고용중단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시책
3.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4. 그 밖에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정책에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고용중단 예방) 도지사는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양성평등한 근로 환경 조성

2.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 조성
3. 결혼·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
4. 임신부터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고용중단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5. 고용중단 예방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법인 등 지원
6. 그 밖에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직업교육훈련) 도지사는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특성과 인력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
2. 고용중단 여성의 특성별 교육훈련
3. 고용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중단 여성에 적합한 전라남도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육아 및 돌봄과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
2. 장기적·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도지사는 고용중단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직종을 발굴하여 전라남도 유망직종으로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턴취업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과 고용중단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62호

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 재난 등을 관광 자원화 하는 역사교훈관광의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교훈관광”이란 전라남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참상 지역이나 재난 지역 등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교훈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2. 자원연구 및 실태조사
3. 기반 조성 사업
4.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주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
6.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8. 재원조달 계획
9. 그 밖에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연구)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관광과 관련 있는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조사연구

2. 기반조성 및 콘텐츠 개발
3. 전문 인력 양성 교육
4. 프로그램 발굴·운영
5.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설사 배치) 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설사에게 역사교훈관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활성화) 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에 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63호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란 지역 관광문화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육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가 지역 관광문화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직무)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문화·생태자원 등 홍보
2. 학교 체험학습 시 지역 관광문화자원 홍보
3. 관광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
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직무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관광문화 분야 청년 인력 관리
3. 관광문화자원 현황 및 중점 콘텐츠

4.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초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문화자원 조사·연구

2. 관광문화 활용 및 청년홍보활동가 홍보·마케팅

3. 지역 관광문화자원 발굴

4. 역량 강화 컨설팅

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가 제4조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의회, 포럼 등 운영

2.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를 대상으로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과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64호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사회보험료 지원)” 을 “(사회보험료 등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보험료” 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및 사회보험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65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및 전라남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를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 를 “(품질점검단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소속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 이라 한다)을 둔다” 를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검수단의 기능)” 을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수단” 을 “점검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구조·단지” 를 “구조와 단지” 로, “자문에 대한 조언” 을 “상태 자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요결함” 을 “주요 결함” 으로, “자문에 대한 조언” 을 “자문”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검수단의 구성 등)” 을 “(구성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수단은” 을 “점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로,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 이라 한다)” 을 “점검위원” 으로, “검수단을” 을 “점검단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수단” 을 “점검단” 으로, “검수위원” 을 “점검위원”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수위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을 “점검위원의 수를 증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수단” 을 “점검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설치하고 운영하여 검수단” 을 “설치하여 점검단” 으로 한다.

③ 점검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점검위원들이 선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검수범위)” 를 “(점검대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를 “영 제5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란”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

② 시장·군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점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본세대 선정은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 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수단” 을 각각 “점검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점검결과 제출 등) 점검단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검수위원” 을 각각 “점검위원” 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피)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점검위원에게 공정한 품질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품질점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 중 “검수위원” 을 “점검위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66호

전라남도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도의 보도와 길어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도”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지방도를 말한다.
2.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길어깨”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노상시설”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6.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설치·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도 노선, 차로폭, 도로선형, 교차로 등 현황
2. 자동차 등 통행량 현황
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관리

4. 그 밖에 보도와 길어깨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군의 보도와 길어깨 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군,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노상시설 설치) 도지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상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시장·군수에게 노상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상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의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한 노상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점검 및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내 도시·군계획시설의 도로와 「도로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공공기관 포함)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훼손시설의 복구) ①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보도와 길어깨가 훼손되었을 경우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

②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훼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67호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거나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전라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제4조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6조를 삭제한다.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68호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를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에” 를 “전라남도 내 공항에”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을” 을 “도 내 공항을”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를 “도지사에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69호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3.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 확보 방안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재난안전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실장·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재난안전산업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서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 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과의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난 안전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70호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대상사업)” 을 “(사업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확충사업” 을 “확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 사업” 을 “추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족 체류 프로그램

제4조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농산어촌유학사업” 을 “농산어촌유학 사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71호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받은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품을 추가하여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현지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72호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예비 창농자”란”을 ““예비창농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창농기업”이란”을 ““창농자”란”으로, “아니한 기업”을 “않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원기업”이란”을 ““창농활동 지원자”란”으로, “예비 창농자 및 창농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을”을 “예비창농자 및 창농자를 지원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농타운 회원”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창농타운 누리집에 회원가입하여 회원으로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 창농타운(이하 “창농타운”이라 한다)”을 “창농타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예비 창농자, 창농기업, 지원기업”을 “예비창농자, 창농자, 창농활동 지원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창농 상담 지원
4. 제품연구·개발 장비사용 및 기술 지원
5. 사업화 지원

제3조(중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농타운”을 “청년 창농타운(이하 “창농타운”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부·외부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내부의 장비,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임시 휴관일”을 “임시휴관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개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시설 사용자 등)”을 “(시설사용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예비 창농자, 창농기업, 지원기업”을 각각 “창농타운 회원”으로, 같은 항 중 “범

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시설 사용료)” 를 “(시설사용료)” 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창농타운 회원이 창농의 목적으로 창농타운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창농타운 회원이 창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창농타운 회원이 아닌 자가 사용할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예비창농자 및 창농자의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콘텐츠 융합기술 구현, 상품화, 서비스화, 투자유치지원
2.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능성 분석, 표준화, 안정성 평가 지원
3. 지식재산 출원, 기업설명 활동, 혁신기술 기획 상담 지원
4.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및 농산업 선도기업 관계망 지원
5. 그 밖에 예비창농자 및 창농자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들” 을 “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예비 창농자” 를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예비창농자”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창농기업” 을 “창농자”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비 창농자나 창농기업” 을 “예비창농자나 창농자를” 로, “창농기업을 선도” 를 “선도” 로, “지원기업” 을 “창농활동 지원자” 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제9조” 를 “제10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73호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조류”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다시마, 톳, 미역, 매생이, 우뭇가사리 등의 다세포 식물(「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해조류산업”이란 해조류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유통·수출·판매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3. “해조류가공품”이란 해조류를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조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조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해조류 생산성 향상, 해조류가공품 소비촉진과 유통지원
4.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시장 개척, 홍보
5.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업·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추진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조류산업 성장 여건 조성
2.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3.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자동화
4. 신제품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구개발 추진)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해조류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도지사는 전라남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74호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3. 추진 계획 및 전략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 3. 질소질 비료 절감
-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 5.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 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교육)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75호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60일” 을 “30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처리하는데” 를 “처리하는 데” 로, “60일” 을 “30일” 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76호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신생아 건강보험비”란 도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생아 건강보험비 지원) 도지사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생아 건강보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및 우수 가맹점 선정,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77호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도교육(영토 주권 교육을 포함한다)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2. 토론회 및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교재 보급
4. 전문가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78호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지사는” 을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또는 공공 건축물의” 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79호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를 “다른 사람의 흡연 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흡연구역” 이란” 을 ““흡연실” 이란 금연구역 내에” 로,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 을 “따로 지정한 장소나 시설물”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6항에 따라 흡연” 을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간접흡연” 으로,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때” 를 “경우” 로, “고시하여야” 를 “알려야” 로 한다.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3항 중 “표시방법 등은” 을 “표시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흡연구역 지정)” 을 “(흡연실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흡연구역을 지정” 을 “흡연실을 설치” 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과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산림박물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80호

전라남도 산림박물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전라남도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산림박물관의 명칭은 전라남도 산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박물관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초평1길 15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전시한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박물관 소유의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소장품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납”이란 소장품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장품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소장품에 관한 교육 및 학술 조사·연구
3.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소장품에 관한 강연회·전시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소장품에 관한 복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소장품·간행물·프로그램 관련 정보의 교환 및 유기적인 협력
7. 산림문화 및 평생교육 관련 각종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 ① 박물관의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전시실
2. 기획전시실
3. 수장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은 그 시설 내외부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체험료·수강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지사는 박물관 관련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 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악취를 내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 물질 등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성·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단순 기념 촬영 제외)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박물관 안에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5.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운영·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박물관 운영 개선
3. 박물관 후원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박물관 관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소장품의 취득과 수집 대상) ①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은 구입과 기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소장품의 수집 대상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유물과 그 밖의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으로 한다.

제16조(유물 구입) ① 도지사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거나 현지조사를 거쳐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이 서명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유물 등은 도지사가 평가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박물관 소장품 수집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평가 대상 유물의 선정
2. 평가 대상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
3. 평가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구입 적정 가격
4. 기타 소장품 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관장이 된다.
-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구입 유물 관련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및 학예연구사
 2. 유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평가위원회 회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 ⑦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 대상 유물이 평가위원회 위원 소유인 경우
 2. 평가 대상 유물이 평가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제2항제3호에 따른 유물의 구입 적정 가격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 ⑨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 기록은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8조(소장품 관리) ① 도지사는 박물관 소장품의 분실, 훼손, 도난 등을 방지하고,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수장고 등의 공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시 또는 대여 중인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소장품은 안전한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③ 박물관이 취득한 소장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등록된 소장품이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품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관의 지정) 도지사는 박물관 소장품의 출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관은 박물관 관장, 분임관리관은 업무 담당 팀장,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소장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제20조(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소장품이 본래의 형체와 목적을 상실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손상 소장품의 수리·복원 및 가치 평가 또는 불용
 - 2. 소장품 손상의 책임 관계
- ②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관장, 업무 담당 팀장, 관계 학예연구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박물관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도지사는 불용 결정한 소장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소장품 대여) ① 도지사는 박물관의 전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 1. 박물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 2.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 3. 소장품을 박물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전시 등에 한하여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프로그램 운영) ① 도지사는 박물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숲 해설가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개설된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폐강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81호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지사” 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방안
3.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단지 조성 방안
4.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 방안
5.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5조, 제6조 및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연차별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탄소중립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매년 전라남도의회에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탄소중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활동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업무담당공무원
3.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기업,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4.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중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국내외 지역(도시)간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개발과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2.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외 세미나 및 포럼 개최
4.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넷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82호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넷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넷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2트랙(안전시설 포함)

제3조 중 “삼포리 1894” 를 “삼포리 1904” 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자동차경주대회” 를 “모터스포츠대회” 로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한 법인·단체가 비전용으로 일괄 계약 시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 이 경우 주중에 한정하며 일반 임대 F1트랙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가. 연간 15일 이상: 40퍼센트

나. 연간 30일 이상: 50퍼센트

4. 동일한 법인·단체가 연간 15일 이상을 전용으로 일괄 계약 시 사용료의 20퍼센트 경감. 이 경우 주중 일반 임대로 한정한다.

8.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2조제4항 중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를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 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보칙” 을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모터스포츠 발전 및 경주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앞에 “제6장 보칙” 을 삽입한다.

제22조 중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를 “「전라남도 도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사 용 료		비 고
		주중(월~금)	주말·공휴일	
모터 스포츠 대 회 (사 료 차) 1)	F1 트랙(5.615km)	26,000,000	40,000,000	-1일 8시간 기준 (관람석 개방)
	상설트랙(3.045km)	20,000,000	30,000,000	
모터 스포츠 대 회 (이 료 차) 1)	F1 트랙(5.615km)	13,000,000	20,000,000	
	상설트랙(3.045km)	10,000,000	15,000,000	
일반 임대	F1 트랙(5.615km)	13,000,000	20,000,000	-1일 8시간 기준 -해당 시설 전용 사용시 (관람석 미 개방)
	상설트랙(3.045km)	10,000,000	15,000,000	
	제2 트랙(3.29km)	10,000,000	15,000,000	
	F1 피트(1개소, 135㎡)	100,000	150,000	
	상설 피트(1개소, 68㎡)	60,000	90,000	
	F1 패독(1개소, 940㎡)	800,000	1,200,000	
	상설 패독(1개소, 497㎡)	480,000	720,000	
	팀 빌딩(1동, 647㎡)	800,000	1,200,000	
	미디어 센터(2층, 1,696㎡)	2,000,000	3,000,000	
서킷 라이선스	서킷 라이선스	100,000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카트는 영구
스포츠 주행권 2)	1회 25분 기준	40,000 (보험료 별도)		-10회 주행시 1회 주행권 무료 -개별피트 사용 시 일반임대 피트 사용료 별도 부과
설비 임대	폰더 임대	20,000		-1일 8시간 기준
물품 임대	무전기	5,000		-1일 8시간 기준
	헬멧	5,000		
	목보호대	10,000		
	불연의복	10,000		
	불연장갑	5,000		

- 1) 사용료에는 해당트랙, 피트, 미디어센터, 패독클럽 1실, 팀빌딩 1동, 청소차, 계측시스템 제공 포함. 혼합형(사료차+이료차) 대회는 사료차 사용료 적용
- 2) 서킷 라이선스경주장 이용규칙 및 모터스포츠 기본교육 이수과정을 발급받은 자만이 스포츠 주행 가능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

○ 카트경기장

(단위 : 원)

구 분		주중(월~금)	주말·공휴일	비 고	
주 행	레저 및 주니어	1인승	10분 13,000	10분 16,000	
		2인승	10분 20,000	10분 23,000	
	단체	1인승	10분 8,000	10분 9,000	15인 이상
		2인승	10분 12,000	10분 13,000	
	스포츠 카트		10분 26,000	10분 33,000	
	레이싱		10분 33,000	10분 39,000	라이선스 소지자에 한함
경기장 임대		오전 1,500,000 오후 1,500,000 야간 1,500,000	오전 2,000,000 오후 2,000,000 야간 2,000,000	부속시설 포함	
코스 임대		1일 39,000 야간 20,000	1일 65,000 야간 39,000	본인 카트(소모품 포함) 사용, 1인 기준	
피트 임대		1일 50,000	1일 80,000		

- 계절 및 시간 구분

구 분	주 간	야 간	비 고
하계 (4월~10월)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0:00	
동계 (11월~3월)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	

- 오프로드경기장 및 오토캠핑장 이용자(숙박당일 및 다음날에 한함)는 레저 및 주니어 카트 이용 시 단체 사용료 적용

○ 오프로드경기장

(단위 : 원)

구 분		주중(월-금)	주말·공휴일	비 고
주행	1인승	20분 12,000 30분 17,000	20분 15,000 30분 21,000	
	2인승	20분 17,000 30분 24,000	20분 22,000 30분 30,000	
	단체	10분 5,000	10분 6,000	15인 이상
경기장 임대		오전 500,000 오후 500,000	오전 800,000 오후 800,000	부속시설을 포함하며, 트랙 변경비용은 임차자 부담
보관료		1개월 50,000		연간 일사불 10%할인

- 계절 및 시간 구분 : 카트경기장과 동일
- 카트경기장 및 오토캠핑장 이용자(숙박당일 및 다음날에 한함)는 단체 사용료 적용. 단, 임대료는 미적용

○ 오토캠핑장

(단위 : 원)

구 분	비성수기		성수기(7월,8월,F1기간)		비 고
	주 중	주말·공휴일	주 중	주말·공휴일	
캠핑트레일러	50,000	70,000	80,000	100,000	주중 연박시 10% 할인
캐러밴사이트	14,000	21,000	22,000	28,000	
야영장(텐트사이트)	14,000	17,000	18,000	21,000	

- 금요일은 주말요금 적용

○ 생활야구장

(단위 : 원)

구 분	주 중(월-금)	주말·공휴일	비 고
야구임대	70,000	100,000	1회 2시간 30분 기준
일반행사 임대	150,000	200,000	1회 4시간 기준

- 대관시간
 - 하계(4월~10월) : 08:00~18:00
 - 동계(11월~3월) : 09:00~17:00
 - 다음 시간 임대가 없을 경우 초과 사용 가능하고, 초과 사용 1시간당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자동차복합문화공간

(단위 : 원)

구 분		단위	주중	주말·공휴일 (할증)	비 고
드라이빙장	드라이빙장 임대	일	3,000,000	3,600,000	1일 8시간 기준 (부속시설 포함)
자전거대여	1인용	시간	4,000	4,000 (2,000)	1시간 기준 (1시간 초과시 1시간당 할증)
	2인용		6,000	6,000 (3,000)	
	4인용		8,000	8,000 (4,000)	
	헬멧		1,000	1,000 (500)	
키즈 드라이빙장	개인	시간	10,000	15,000	30분 기준 (5인이상 예약 운영) * 개별 사용자 미 운영
	단체		6,000	9,000	
짚와이어	개인	회	10,000		1회 기준 (성인, 청소년, 어린이 구분 없음)
	단체		8,000		
클래식카트	2인용	시간	30,000	35,000	20분 기준
가상체험관	가상1	회	5,000		1회 기준 (주중주말 구분 없음)
	가상2		6,000		
	가상3		7,000		
	가상4		10,000		
	가상5		10,000		
	영상관		4,000		
	자유이용권		35,000		
물놀이장	어른+어린이 (동반)		10,000		가동시기 (7월-8월)

- 초과 사용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60분)으로 본다.
- 키즈드라이빙장은 교육 우선 운영하며, 개인은 5인 이상 예약 후 이용 가능, 단체는 15인 이상
- 짚와이어는 체중 35kg ~ 100kg 이용 가능, 단체는 15인 이상
- 카트경기장, 오프로드경기장, 오토캠핑장 이용자(숙박당일 및 다음날에 한함)는 키즈드라이빙장, 짚와이어 이용 시 단체 사용료 적용

[별표 4]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사용료 감면 대상자				
1. 만 3세 이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명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군포로의 승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사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한 경우 13.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1인 14.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15.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사용료 감면 세부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율	비고
【별표2】 부대시설	만3세이하	면제		경기장 임대는 제외 - 카트 (경기장 · 코스 · 피트) - 오프로드경기장 - 생활야구장 - 드라이빙장
	장애인	중증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경증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호 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금의 30% 할인		
	업무협약	요금의 30% 할인		
	다문화가족	요금의 2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20% 할인		
	출향도민	요금의 20% 할인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5383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2. 학생상담 지원 사업
3.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4.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① 학생상담 활성화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2. 학교상담실 지원
3.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4. 학생상담 개선 방안 및 정책 개발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생상담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생상담 담당자
4. 그 밖에 학생상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와 상담 공간을 분리할 것. 다만,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학생의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에 학교상담실을 설치할 것.
3. 학생상담 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 장치를 설치할 것.

제9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생상담 담당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장) 이 조례에 따라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5384호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집행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건설산업”이란 도내에서 경영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3. “발주청”이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공사 시행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사에 도내 생산 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도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제5조(공사의 분할 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 1.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하여 시행한다.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산업체 도급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5385호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공사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확보 및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부실공사로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고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 부실 측정)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공사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진, 설계서 등 시공기록과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측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부실 정도 측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 결과 부실공사 여부,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5386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신안군의 68번란의 “암태초추포분교장” 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64번 명칭란의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를 “전남에너지고등학교” 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특수지급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벽지 다지역 중 신안군 암태면 추엽길 82(암태초등학교추포분교장)를 삭제한다.

[별첨 1]

별표 신·구 대비표

【별표 2】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안			
시군별	번호	명 칭	위 치	시군별	번호	명 칭	위 치
신안군	68	임태초등학교 추포분교장	임태면 추업길 82	〈삭 제〉			

【별표 4】 고 등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번호	명 칭	위 치	번호	명 칭	위 치
64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영암군 신북면 황금동로 16-13	64	전남에너지고등학교	(현행과 같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규칙 제3262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규칙 제3244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2를 삭제한다.

별표 15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의2, 별표 15, 별표 15의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직렬 \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경영,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운할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차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공업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소방, 품질경영,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공업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외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입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외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업 (화학) (가스)	기술사(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사(화학, 화학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학, 화학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직렬 \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공업 (지원)	기술사(자원관리, 화학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광산보안, 화학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광산보안, 화학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족인공수정사
농지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표지,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표지, 수질환경)
해양수산 (선박)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기공,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학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기용조종사

직렬 \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설 (교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직렬 \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시설관리		가능장(전기) 기사(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가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 가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경영)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가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가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유탄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가능장(가스, 위험물)	산업기사(가스, 위험물, 화공)

직렬 \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기공,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직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직렬 \ 계급	연구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기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시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산자동화,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시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직렬	계급	연 구 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영양사, 위생사
복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해양 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생명공학)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직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방재안전연구		기사(방재)

3. 지도사

직렬	계급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등급별 가산점

구 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별표 15의6]

실적 가산점(제25조의4 관련)

분야별	부여대상	배점	가점요건
1. 중앙단위 기관표창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 국무총리 • 헌법기관의 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1.0점 0.7점 0.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 • 유공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상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팀장급, 담당자(전·현임)에게 가점 분할
2. 개인 포상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제언제도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상 - 은상·동상 - 장려상 ※ 도 제언제도 채택 시 배점의 1/2부여 • 대한민국 공무원상 • 청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 - 23위 - 45위 • 중앙단위 평가 규제개혁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포장(12위) - 대통령·국무총리(34위) - 장관(5위) * 도 자체평가 포상자는 배점의 1/2부여 	0.8점 0.6점 0.4점 1.0점 0.8점 0.6점 0.4점 0.5점 0.3점 0.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해당 직급 수상에 한함 • 공동제언의 경우 2명까지 가점 부여 • 부제언자(1명)는 주 제언자의 1/2점 부여 • 채택제언 실시자(1명)는 0.1점 부여
3. 근무실적 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원: 현원의 5퍼센트 이내 • 실적평가 결과(선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등급(20퍼센트) - A등급(40퍼센트) - B등급(30퍼센트) - C등급(10퍼센트) 	2.0점 1.5점 1.0점 0.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 중 실·국·원장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정발전에 탁월하게 이바지한 자 - 도정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자 - 격무·고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 - 역점시책·격무·고충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탁월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 배점은 주무부서의 1/2부여 ※ 다만, 사전에 실적가산점평가위원회 개최(심의) 결과를 반영하되, 동일 실적에 대해 근무실적 우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부여
4. 세수증대, 예산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확보 및 예산절감액(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0.5점 0.3점 0.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2명 이내 • 세원확보 및 예산절감으로 포상금을 받았거나, 중앙부처 감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5. 중앙부처 파견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앙부처(위원회, 법인 등 포함)에 파견·교류된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 2년 이상 	0.5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1. 1. 이후 중앙부처에 파견·교류된 공무원 ※ '21. 12. 31. 이전 중앙부처 파견·교류 공무원은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훈령 제1429호, '20.2.6.)」의 가점 기준 적용 ※ 계획인사교류 가산점은 “별표 15의4”에 따름

분야별	부여대상	배점	가점요건
6.다자녀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자녀(여성공무원) •둘째자녀(여성공무원) •셋째자녀(남녀공무원) •넷째자녀(남녀공무원) ※ 출산 직후 출산휴가·육아휴직할 경우 복귀 시 부여 	1.0점 1.5점 2.0점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12.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 '18. 12. 1. 이전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은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훈령 제1401호, '18.6.28.)」의 가점기준 적용
7.정부합동평가 우수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달성(정량지표) - 우수사례 선정(정성지표) 지표 ※ 부분평가지표 중 평가대상이 8개 미만의 도(道)일 경우 가점대상 제외 	0.2점 0.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자로 지표별 평가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 또는 실무자 1명 (단, 복수지표 담당의 경우 가점 상한은 0.5점)
8.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II 등급 이상) •청렴도 평가결과 매년 설정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0.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평가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 또는 실무자 2명 이내
9.국고확보 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원: 연 8명 이내 •대상: 국고확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평가결과(선발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등급: 2명 이내 - A등급: 2명 이내 - B등급: 4명 이내 •평가방법: 국고확보 활동 전체 단계를 평가 ※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체적 기준 마련, 평가 실시 	0.8점 0.6점 0.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1.1~12.31) 실적에 대해 평가 후 최초 도래한 정기평정에 반영 •동일 사업에 대해 1회만 인정(단, 다년간 국고 확보 활동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단계, 최종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 가능, 이 경우 단계별 담당자가 다를 경우에만 인정) •평가일 현재 6개월 이상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 한 팀장급 및 담당자(사업당 2명 이내)

※ 실적가점 사유 발생 후 최초 정기평정일까지 신청(가점은 사유 발생 시부터 가점부여 기간 산정)

(비고) 1. 동일업무에 대한 분야별 실적가점이 다수 해당하는 경우는 가점이 가장 높은 분야만 인정한다.

2. 제5호(근무실적 우수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점을 받은 특정업무의 동일 담당자에 대하여 실적가점 신청 1년간(평정2회) 제한

나. 특정업무에 대한 근무실적 우수자로 실적가점이 1회 인정된 이후 전보 등의 사유로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차기 평정에 한정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실적가점 신청 제한

지방공사 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장 연봉재심위원회 운영지침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훈령 제1452호

지방공사 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장 연봉재심위원회 운영지침 폐지훈령

지방공사 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장 연봉재심위원회 운영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담당제 운영규정 폐지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훈령 제1453호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담당제 운영규정 폐지 훈령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담당제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1-34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진남육교	여수시 미평동 700-4 일원	여수시	시설물 철거	철거로 인하여 안전관리 불필요	해 제
신기육교 2	여수시 신기동 179-3 일원				

전라남도 고시 제2021-346호

해남군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해남군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사업명 :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 사업
 -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동외리 일원
 - 사업내용 : L = 0.6km, B = 15m[기존도로 L = 0.6km(B = 3~6m → 15m 확장)]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지정목적
 - 문내면의 우수영항은 우수영-제주간 여객선 취항으로 주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 및 우수영항 서쪽에 추가적인 어항조성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 국도 77호선 우수영교차로부터 진입하는 현황 도로(3~6m)를 확장하여 우수영항 및 문내면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시행기간 : 2017년 ~ 2022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 사업시행방식 : 매입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폐기물처리계획
 - 사업지구 내 건설폐기물 및 소각폐기물, 생활쓰레기: 본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 폐아스콘 등)과 소각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예정이며,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처리할 예정

○ 대기환경보전계획

- 대기환경 현황 : 공사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기질의 영향이 가장 큰 PM-10, NO2항목에 대한 저감 방안을 수립함.
- 대기질 오염 저감대책
 - 미세먼지(PM-10) : 토공 및 운반 작업 시 중장비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저감대책으로는 살수차운행, 공사차량의 저속운행 등으로 저감할 계획이며, 주기적인 장비의 지도 및 교육 실시로 미세먼지발생을 억제
 - 이산화질소(NO2) : 중장비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며, 노후화장비 및 정비불량 장비에서도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노후화된 중장비 교체 및 주기적인 정비로 발생을 최소화

○ 소음 진동방지계획

- 소음·진동 현황 : 주변지역은 주거지, 도로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경미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소음·진동 저감대책 : 장비 작업 시 주간작업 실시 및 소음도가 큰 노후화장비의 교체 등의 방법으로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공사를 실시

○ 토질환경 보전계획

- 토질환경 현황 : 공사 시 투입되는 건설장비에서 폐유 및 작동유등으로 토양오염 등이 예상
- 토질환경오염 저감대책 : 공사 시 투입되는 건설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작동유등은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할 예정

○ 환경관련 민원처리계획

- 본 공사에 환경관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나, 공정진행상이나 미처 발견치 못하는 사항 등이 발생하여 민원발생시 민원의 경·중여부를 현장대리인이 판단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환경민원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민원을 해결할 계획임

5. 토지이용계획

-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한 편입 토지는 31개 필지, 11,663㎡로써 모두 도로 용지로 활용될 계획임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 도로계획 : 우수영항 활성화를 위하여 기 개설된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과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보조간선기능을 확보하여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개요

- 토공 : 흙깎기 토사 1,174㎡, 흙쌓기 토사 212㎡, 터파기 토사 3,103㎡, 되메우기 토사 2,647㎡, 사 토 1,101㎡, 깨기 1,478㎡

- 보도 및 측구공 : 보차도경계석(200×250) 773m, 도로경계석(150×150) 750m, 인조화강 규사블록포장 1,274㎡
- 우수공 : 우수관거(D250~D800) 777m, 우수맨홀 14개소, 집수정 3개소, 우수받이 41개소
- 상수도공 : 상수도관(D100) 268m, 가정상수도관(D16) 220m
- 포장공 : 보조기층 1,129㎡, 기층 5,147㎡, 표층 7,908㎡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계획

구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금액(백만원)	2,000	2,000	-	-	-

○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합계	2017년 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비고
국비(백만원)	2,000	300	500	600	600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지는 총 31개 필지(11,663㎡)로써 국유지 8개 필지[7,286㎡(88.8%)], 해남군 9개 필지[2,935㎡(25.2%)], 사유지 14개 필지[1,442㎡(12.4%)]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원활한 도로 조성을 위한 매입(협의 및 보상)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
- 조성된 토지는 모두 도로로 활용될 계획으로 별도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면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문내	등외	1037-1	도	4,765.0	606		국토교통부
2	문내	선두	551-1	도	1,113.0	684		국토교통부
3	문내	선두	553-1	도	1,448.0	942		국토교통부
4	문내	선두	555-1	도	3,516.0	2,034		국토교통부
5	문내	선두	638	도	12,203.0	1,314		국토교통부
6	문내	선두	371-117	도	1,991.0	1,143		국토교통부
7	문내	선두	371-27	구	5,246.0	284		해남군
8	문내	선두	551-5	대	414.0	21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551-5	김영구
9	문내	선두	552	대	288.0	4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434-59	정성균
10	문내	선두	553	대	403.0	123		해남군
11	문내	선두	553-2	전	404.0	94	광주 북구 두암동 578-32	김순덕외1인
12	문내	선두	558-4	전	131.0	131		해남군
13	문내	선두	558-2	답	428.0	35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5	박귀민외3인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면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4	문내	선두	558-5	전	208.0	208		해남군
15	문내	선두	371-145	답	1,122.0	3	전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53	이순옥
16	문내	선두	371-172	대	678.0	3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12-1	임미자
17	문내	선두	421-14	잡	7,145.0	229		해양수산부
18	문내	선두	421-13	잡	1,617.0	1,216		해남군
19	문내	선두	421-7	잡	861.0	159		해남군
20	문내	선두	421-6	잡	318.0	318		해남군
21	문내	선두	421-12	잡	951.0	481		해남군
22	문내	선두	421-8	대	77.0	77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20-2	김홍환
23	문내	선두	421-10	대	15.0	15		해남군
24	문내	선두	421-5	대	172.0	172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20-2	김홍환
25	문내	선두	421-2	대	549.0	549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10	김동례외1인
26	문내	선두	421-1	대	66.0	66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377	최병준
27	문내	선두	421-9	도	454.0	334		국토교통부
28	문내	선두	372-2	도	26.0	26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377	최성운
29	문내	선두	373-2	도	20.0	20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26	김적단
30	문내	선두	374-2	도	20.0	20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98	홍준욱
31	문내	선두	421-4	잡	316.0	316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10	김동례외1인
합 계					46,965	11,663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현황도로를 확장하여 우수영항 및 문내면 진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도로)을 확충하려는 공공사업으로써 별도의 사업성을 산정하지 않음

14.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 도면

-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5	15	보조간선 도로	364	대로 3-7	중로 2-27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97호 (1982.6.15.)	회원63
변경	중로	2	15	15	보조간선 도로	370	대로 3-7	중로 2-27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2	15	보조간선 도로	1,074	대로 3-4	항만②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97호 (1982.6.15.)	
변경	중로	2	22	15	보조간선 도로	1,071	대로 3-4	항만②	일반 도로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 2-15	중로 2-15	- 중로 2-15호선 확장에 따른 선형 변경 - 연장 기정 364m, 변경 370m(증 6m)	- 해남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우수영향 진입도로 확장사업) 실시에 따른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22	중로 2-22	- 중로 2-22호선 확장에 따른 선형 변경 - 연장 기정 1,074m, 변경 1,071m(감 3m)	- 해남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우수영향 진입도로 확장사업) 실시에 따른 선형 변경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5.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계도서는 해남군 해양수산과 (☎061-530-54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해남군수
-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2. 사업의 명칭·목적·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기간

- 사업명 :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 사업
- 목 적 : 현황도로(3~6m)를 확장하여 우수영항 및 문내면 진입여건 개선
-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동외리 일원
- 사업내용 : L = 0.6km, B = 15m[기존도로 L = 0.6km(B = 3~6m → 15m 확장)]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사 업 비 : 2,000백만원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 생략

4.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

구 분	합계	국토교통부	도비	해남군	비고
금액(백만원)	2,000	2,000	-	-	-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합계	2017년 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비고
국비(백만원)	2,000	300	500	600	60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면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문내	동외	1037-1	도	4,765.0	606		국토교통부
2	문내	선두	551-1	도	1,113.0	684		국토교통부
3	문내	선두	553-1	도	1,448.0	942		국토교통부
4	문내	선두	555-1	도	3,516.0	2,034		국토교통부
5	문내	선두	638	도	12,203.0	1,314		국토교통부
6	문내	선두	371-117	도	1,991.0	1,143		국토교통부
7	문내	선두	371-27	구	5,246.0	284		해남군
8	문내	선두	551-5	대	414.0	21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551-5	김영구
9	문내	선두	552	대	288.0	4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434-59	정성균
10	문내	선두	553	대	403.0	123		해남군
11	문내	선두	553-2	전	404.0	94	광주 북구 두암동 578-32	김순덕외1인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면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2	문내	선두	558-4	전	131.0	131		해남군
13	문내	선두	558-2	답	428.0	35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5	박귀만외3인
14	문내	선두	558-5	전	208.0	208		해남군
15	문내	선두	371-145	답	1,122.0	3	전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53	이순옥
17	문내	선두	421-14	잡	7,145.0	229		해양수산부
18	문내	선두	421-13	잡	1,617.0	1,216		해남군
19	문내	선두	421-7	잡	861.0	159		해남군
20	문내	선두	421-6	잡	318.0	318		해남군
21	문내	선두	421-12	잡	951.0	481		해남군
22	문내	선두	421-8	대	77.0	77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20-2	김홍환
23	문내	선두	421-10	대	15.0	15		해남군
24	문내	선두	421-5	대	172.0	172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20-2	김홍환
25	문내	선두	421-2	대	549.0	549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10	김동례외1인
26	문내	선두	421-1	대	66.0	66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377	최병준
27	문내	선두	421-9	도	454.0	334		국토교통부
28	문내	선두	372-2	도	26.0	26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377	최성윤
29	문내	선두	373-2	도	20.0	20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26	김적단
30	문내	선두	374-2	도	20.0	20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98	홍준욱
31	문내	선두	421-4	잡	316.0	316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10	김동례외1인
합 계					46,965	11,663		

6.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계도서는해남군 해양수산과 (☎061-530-54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1-347호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고시

전라남도지사는 『붕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완료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붕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 사업목적: 상습침수 하천을 정비하여 가옥 및 농경지 침수피해예방
3.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km)	사업비 (백만 원)	사업기간
붕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나주시 다도면 화순군 도암면	8.25	32,592	2016. 5. ~ 2021. 12.

4. 시 행 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지사
5. 편입토지 세목조서 : 다음
6.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별첨2(나주시 및 화순군 이관)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나주시 안전재난과, 화순군 건설과에서 열람 가능
8. 기타사항
 - 관계도면 및 토지 지장물 편입용지조서 열람
 - 나주시 안전재난과 (061-339-7862), 화순군 건설과 (061-379-3801)

편입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1	나주	다도면 도동리	710-1	유	103	한국 농어촌공사	전라남도	
2	나주	다도면 도동리	710	답	9	양용묵	전라남도	
3	나주	다도면 도동리	698-3	답	61	조인임	전라남도	
4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9-1	천	16	박영신	전라남도	
5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9	답	34	박영신	전라남도	
6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8-2	답	519	김재구	전라남도	
7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8-1	도	80	김재기	전라남도	
8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7-2	답	130	김맹례	전라남도	
9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7-1	도	21	나주시	전라남도	
10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6-3	답	174	임백현	전라남도	
11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6-2	도	51	임백현	전라남도	
12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6-1	유	27	한국 농어촌공사	전라남도	
13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5-1	대	26	김재구	전라남도	
1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62	도	16	국유지		
15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4-1	유	24	한국 농어촌공사	전라남도	
16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4-2	임	209	김재기	전라남도	
17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3	임	147	양성기	전라남도	
18	나주	다도면 도동리	703-1	유	25	한국 농어촌공사	전라남도	
1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60-1	도	16	국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20	나주	다도면 도동리	669-1	대	41	오문호	전라남도	
21	나주	다도면 도동리	667-1	대	27	김덕기	전라남도	
22	나주	다도면 도동리	665-1	대	130	보성오씨 모세공피종증	전라남도	
23	나주	다도면 도동리	662-1	대	287	최성남	전라남도	
24	나주	다도면 도동리	661-1	대	132	장치대	전라남도	
25	나주	다도면 도동리	660	대		양호승		
26	나주	다도면 도동리	633-1	대	130	양호승	전라남도	
27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61	도	11	국유지		
28	나주	다도면 도동리	631-2	답	471	양준영	전라남도	
29	나주	다도면 도동리	630-3	답	184	양기영	전라남도	
30	나주	다도면 도동리	630-2	답	240	양만선	전라남도	
31	나주	다도면 도동리	612	답	721	양만선	전라남도	
32	나주	다도면 도동리	611-1	전	971	정은철	전라남도	
3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31-13	구	7,451	국유지		
3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44	구	62	국유지		
35	나주	다도면 도동리	산192	임	8	김병완		
36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41-1	구	73.4	국유지		
37	나주	다도면 도동리	598-1	천	21	국유지	전라남도	
38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43-1	도	1,372.3	국유지		
3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46	구	150.7	국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40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45	도	279.8	국유지		
41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56-1	답	926	고광식	전라남도	
42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55-1	답	349	김대중	전라남도	
4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54-1	답	386	김계흥	전라남도	
4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42	구	548.5	국유지		
45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53-1	답	327.6	김상록	전라남도	
46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52-1	답	436.6	김귀안	전라남도	
47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51-1	답	82	박동남	전라남도	
48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51-2	답	443.3	박동남	전라남도	
4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39	구	129.5	국유지		
50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38-1	도	291.3	국유지		
51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37	구	49	국유지		
52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50-1	답	887.5	장흥고씨 효열공파	전라남도	
5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36	구	14	국유지		
54	나주	다도면 도동리	산142-2	임	376	김해김씨 사군파세방종중	전라남도	
55	나주	다도면 도동리	산141-3	임	56	강정주	전라남도	
56	나주	다도면 도동리	산141-5	도	3	국유지		
57	나주	다도면 도동리	산141-4	도	83	나주시	전라남도	
58	나주	다도면 도동리	394-4	도	282	나주시	전라남도	
59	나주	다도면 도동리	393-3	도	856	나주시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60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47	도	621	국유지		
61	나주	다도면 도동리	394-3	답	55	강정주	전라남도	
62	나주	다도면 도동리	393	천	52	나주시	전라남도	
63	나주	다도면 도동리	390-3	답	110	조순임	전라남도	
64						고성자	전라남도	
65						서명식	전라남도	
66						서혜진	전라남도	
67						서혜정	전라남도	
68						서호인	전라남도	
69						서호준	전라남도	
70						고태영	전라남도	
71						고석곤	전라남도	
72						고석례	전라남도	
73						고성순	전라남도	
74						고석관	전라남도	
75	나주	다도면 도동리	390-2	도	120	나주시	전라남도	
76	나주	다도면 도동리	390-1	도	221	나주시	전라남도	
77	나주	다도면 도동리	389-3	답	119	조순임	전라남도	
78						고성자	전라남도	
79						서명식	전라남도	
80						서혜진	전라남도	
81						서혜정	전라남도	
82						서호인	전라남도	
83						서호준	전라남도	
84						고태영	전라남도	
85						고석곤	전라남도	
86						고석례	전라남도	
87						고성순	전라남도	
88						고석관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89	나주	다도면 도동리	389-2	도	166	나주시	전라남도	
90	나주	다도면 도동리	389-1	도	280	나주시	전라남도	
91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9-3	답	7	김국제	전라남도	
92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45	도	50	국유지		
93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9-4	답	123	김국제	전라남도	
94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9-1	도	305	나주시	전라남도	
95	나주	다도면 도동리	신66-5	임	5	장흥고씨 효열공파	전라남도	
96	나주	다도면 도동리	신65-3	임	30	김승동	전라남도	
97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8	답	669	김안제	전라남도	
98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4-8	도	658	나주시	전라남도	
99	나주	다도면 도동리	220	도	407	나주시	전라남도	
100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7	답	333	최영년	전라남도	
101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42-2	도	1,970	국유지		
102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4-9	답	790	강정주	전라남도	
103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4-7	답	212	화순군	전라남도	
104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3-2	답	16	화순군	전라남도	
105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3-3	답	151	강정주	전라남도	
106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2	도	463	화순군	전라남도	
107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1-5	답	422	김종채	전라남도	
108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1-4	답	215	화순군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109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0-1	도	60	나주시	전라남도	
110	나주	다도면 도동리	신64-1	도	108	국유지		
111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0-3	답	87	김재곤	전라남도	
112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0-4	답	10	김재곤	전라남도	
113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9	도	201	국유지		
114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1-1	도	82	나주시	전라남도	
115	나주	다도면 도동리	신64-2	도	243	국유지		
116	나주	다도면 도동리	신63-1	도	153	국유지		
117	나주	다도면 도동리	신62-1	도	13	국유지		
118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8-1	도	65	국유지		
119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8-2	도	9	국유지		
120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7-1	도	249	나주시	전라남도	
121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7-2	도	328	나주시	전라남도	
122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29	구	75	국유지		
12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42-1	답	82.6	김종채	전라남도	
124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6-2	도	171	나주시	전라남도	
125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6-1	도	168	나주시	전라남도	
126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41-1	답	19.8	김종열	전라남도	
127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5-1	도	15	나주시	전라남도	
128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1-1	대	60	김맹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129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1-2	도	175	강재위	전라남도	
130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1-3	도	70	국유지		
131	나주	다도면 도동리	201-4	도	186	나주시	전라남도	
132	나주	다도면 도동리	0-8952	가	252	국유지		
13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43-1	답	556	김복만	전라남도	
13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44-1	답	44	강신구	전라남도	
135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45-1	답	22.4	강성근	전라남도	
136	나주	다도면 도동리	196	답	297	서영애	전라남도	
137	나주	다도면 도동리	196-1	답	219	서영애	전라남도	
138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32	구	48	국유지		
13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47-1	답	34.7	김학수	전라남도	
140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48-1	답	40	김광수	전라남도	
141					40	김계수	전라남도	
142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49-1	답	220.6	김충남	전라남도	
14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30-1	구	53.1	국유지		
14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92-4	답	75	김송수	전라남도	
145					75	김종채	전라남도	
146					75	김민수	전라남도	
147	나주	다도면 도동리	191	답	375	조현모	전라남도	
148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31	구	32,439	국유지		
14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85	천	410	김기동	전라남도	
150	나주	다도면 도동리	74	천	139	김기동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151	나주	다도면 도동리	65-3	답	223	국유지	전라남도	
152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14-1	구	182	국유지		
15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19	구	236	국유지		
15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18-2	답	263.5	국유지	전라남도	
155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19-1	답	233.5	국유지	전라남도	
156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19-2	답	37.3	강일구	전라남도	
157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20-1	답	332	국유지	전라남도	
158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20-2	답	438	강일구	전라남도	
15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17-1	도	377.6	국유지		
160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21-1	답	406.8	김귀남	전라남도	
161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22-1	답	212.4	김맹근	전라남도	
162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23-1	답	368	박고임	전라남도	
16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24-1	답	433.4	김천임	전라남도	
16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25-1	답	264.2	손길선	전라남도	
165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18-1	구	1,658.7	국유지		
166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26-1	답	1,657.5	손길선	전라남도	
167	나주	다도면 도동리	34-3	도	7	국유지		
168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31-1	답	485.3	김덕환	전라남도	
16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23	구	704	국유지		
170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20-1	구	26.8	국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171	나주	다도면 도동리	33-2	도	89	김영재	전라남도	
172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32	답	1,205.5	손영찬	전라남도	
17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21-1	도	110.9	국유지		
17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32	도	212	국유지		
175	나주	다도면 도동리	30-2	도	10	국유지		
176	나주	다도면 도동리	30-3	도	9	국유지		
177	나주	다도면 도동리	30-4	도	51	국유지		
178	나주	다도면 도동리	32-2	도	40	손길조	전라남도	
179	나주	다도면 도동리	32-3	도	20	나주시	전라남도	
180	나주	다도면 도동리	32-4	도	100	나주시	전라남도	
181	나주	다도면 도동리	31-4	도	205	나주시	전라남도	
182	나주	다도면 도동리	31-3	도	53	나주시	전라남도	
183	나주	다도면 도동리	31-2	도	109	김종채	전라남도	
18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04	구	70	국유지		
185	나주	다도면 도동리	26-3	대	4	문병훈		
186	나주	다도면 도동리	25-4	도	86	나주시	전라남도	
187	나주	다도면 도동리	25-2	답	18	손도형		
188	나주	다도면 도동리	25-3	도	59	나주시	전라남도	
18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86-7	도	397	나주시	전라남도	
190	나주	다도면 도동리	23-1	도	55	나주시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191	나주	다도면 도동리	23-2	도	108	나주시	전라남도	
192	나주	다도면 도동리	23-3	도	76	나주시	전라남도	
19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8-10	도	122	나주시	전라남도	
19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8-7	도	303	나주시	전라남도	
195	나주	다도면 도동리	18-3	도	276.5	손창섭	전라남도	
196					276.5	기익곤	전라남도	
197	나주	다도면 도동리	22	천	268	장덕중	전라남도	
198	나주	다도면 도동리	18-2	도	480	나주시	전라남도	
199	나주	다도면 도동리	21	천	119	이봉춘	전라남도	
200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30	도	866	국유지		
201	나주	다도면 도동리	5-2	도	13	손성만		
202	나주	다도면 방산리	42-1	도	402	국유지		
203	나주	다도면 방산리	1314	도	1,210	국유지		
204	나주	다도면 방산리	1312	천	9,913	국유지		
205	나주	다도면 방산리	43	도	131	국유지		
206	나주	다도면 방산리	산195-2	도	16	국유지		
207	나주	다도면 방산리	44-1	도	24	국유지		
208	나주	다도면 방산리	41-1	도	18	나주시	전라남도	
209	나주	다도면 방산리	41	전	319	김동우	전라남도	
210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47	도	19.8	국유지		
211	나주	다도면 방산리	45-2	도	76	나주시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212	나주	다도면 방산리	40	전	426	김동채	전라남도	
213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37-1	답	263.6	김현	전라남도	
214	나주	다도면 방산리	39	전	664	김기락	전라남도	
215	나주	다도면 방산리	38	천	159	김운포 (김춘식이들)	전라남도	
216					159	김후근	전라남도	
217					159	김운수	전라남도	
218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45	도	312	국유지	전라남도	
219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36	답	227.3	장효성	전라남도	
220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46-1	도	297.8	국유지		
221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44	구	174	국유지		
222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35-1	답	652.1	박종식	전라남도	
223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34-1	답	580.8	박종식	전라남도	
224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33-1	답	955.8	김기환	전라남도	
225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32-1	답	553.4	봉순용	전라남도	
226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31-1	답	346.1	임현철	전라남도	
227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30-1	답	501.9	김동	전라남도	
228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29-1	답	512.5	손귀봉	전라남도	
229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43	구	495.8	국유지		
230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28-1	답	1,134.1	김대중	전라남도	
231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42	구	31.5	국유지		
232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27-1	답	945.2	김철현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233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26-1	답	398.4	김현수	전라남도	
234					398.4	장맹순	전라남도	
235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25-2	답	264.3	조봉수	전라남도	
236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25-1	답	441.8	국유지	전라남도	
237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41-1	구	69.3	국유지		
238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24-1	답	646.9	국유지	전라남도	
239	나주	다도면 방산리	3540	구	687.1	국유지		
240	나주	다도면 방산리	1322	구	15	국유지		
241	나주	다도면 방산리	9	답	1,092	국유지	전라남도	
242	나주	다도면 도동리	966-1	전	42	한정찬	전라남도	
24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72-2	도	175	국유지		
244	나주	다도면 도동리	981-1	전	76	한준호	전라남도	
245	나주	다도면 도동리	981-2	전	253	한준호	전라남도	
246	나주	다도면 도동리	983-1	전	469	한화수	전라남도	
247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63	구	6,065	국유지		
248	나주	다도면 도동리	810-3	전	365	이영배	전라남도	
24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31-31	구	53	국유지		
250	나주	다도면 도동리	신286-1	임	29	김정노	전라남도	
251	나주	다도면 도동리	779-1	전	301	김영국	전라남도	
252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61-1	구	109	국유지		
25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62	도	1,061.4	국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25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31-28	구	147	국유지		
255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79-1	답	515.5	한인찬	전라남도	
256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60	답	412	양호승	-	
257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58-1	구	36.7	국유지		
258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59-1	도	209.3	국유지		
25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31-19	구	216	국유지		
260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78-1	답	33.1	한동호	전라남도	
261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57-1	구	14.1	국유지		
262	나주	다도면 도동리	967-1	임	5	한형호	전라남도	
263	나주	다도면 도동리	980	답	155	강윤희	전라남도	
26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31-26	구	775	국유지		
265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31-25	구	2	국유지		
266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70-1	구	167	국유지		
267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95-1	답	185.8	한공수	전라남도	
268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69-1	구	12.2	국유지		
26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68-1	도	14.4	국유지		
270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67-1	구	61.3	국유지		
271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88-1	답	425.1	한인찬	전라남도	
272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66-1	구	45.4	국유지		
273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65-1	도	77.3	국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비고
						당초	최종	
274	나주	다도면 도동리	1286-1	답	358.7	김영국	전라남도	
275	나주	다도면 도동리	1364-1	구	37.4	국유지		
276	나주	다도면 도동리	784-2	전	76	한인찬	전라남도	
277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31-32	구	24	국유지		
278	나주	다도면 도동리	790-2	전	89	이성배	전라남도	
279	나주	다도면 도동리	1168	도	60	국유지		
280	나주	다도면 도동리	791-2	대	44	한인찬	전라남도	
281	나주	다도면 도동리	632-1	대	18	장규열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1	화순	도암면 왕정리	430	천	7821	건설부		
2	화순	도암면 왕정리	432	도	3442	건설부		
3	화순	도암면 왕정리	359-3	대	18	정남순		
4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0-2	도	60	화순군		
5	화순	도암면 왕정리	359-2	대	19	정남순		
6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0-1	전	63	화순군		
7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1-2	도	40	화순군		
8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1-1	전	60	화순군		
9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3-2	도	40	화순군		
10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3-1	대	50	화순군		
11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4-2	도	33	화순군		
12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4-1	대	53	화순군		
13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5	전	63	양희중		
14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6-2	도	19	김순숙	전라남도	
15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6-3	전	41	김순숙		
16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6-1	도	14	한국농어촌공사		
17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6-4	전	33	화순군		
18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7-1	전	20	화순군		
19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7	전	53	오창엽		
20	화순	도암면 왕정리	369-1	전	13	화순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21	회순	도암면 왕정리	369	전	106	임철주		
22	회순	도암면 왕정리	385-1	전	12	회순군		
23	회순	도암면 왕정리	385	전	124	양호승		
24	회순	도암면 왕정리	386-1	전	5	회순군		
25	회순	도암면 왕정리	386	전	101	양순님		
26	회순	도암면 왕정리	387-1	전	10	회순군		
27	회순	도암면 왕정리	387	전	76	오보현		
28	회순	도암면 왕정리	388-1	전	5	회순군		
29	회순	도암면 왕정리	388	전	117	오문호		
30	회순	도암면 왕정리	465	구	925.3	농림부		
31	회순	도암면 왕정리	395-2	도	207	양공후	전라남도	
32	회순	도암면 왕정리	464	구	1088.9	농림부		
33	회순	도암면 왕정리	395-1	도	82	한국농어촌공사		
34	회순	도암면 왕정리	396-6	도	83	양용득	전라남도	
35	회순	도암면 왕정리	443-6	답	14	회순군		
36	회순	도암면 왕정리	396-3	도	38	한국농어촌공사		
37	회순	도암면 왕정리	395-4	답	83	회순군		
38	회순	도암면 왕정리	396-12	답	33	회순군		
39	회순	도암면 왕정리	396-5	도	33	전라남도	전라남도	
40	회순	도암면 왕정리	396-2	도	34	한국농어촌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41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6-11	답	47	화순군		
42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6-4	도	33	양천회운	전라남도	
43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6-1	도	26	한국농어촌공사		
44	화순	도암면 왕정리	443-9	답	26.7	양해승	전라남도	
45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6-10	답	31	화순군		
46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7-2	도	17	김승춘석		
47	화순	도암면 왕정리	443-8	답	17	장치대	전라남도	
48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7-1	도	35	한국농어촌공사		
49	화순	도암면 왕정리	443-7	답	4.6	장치대	전라남도	
50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7-4	답	47	화순군		
51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8-2	도	20	오춘섭	전라남도	
52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8-1	도	40	한국농어촌공사		
53	화순	도암면 왕정리	188-4	도	7	오춘섭	전라남도	
54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8-4	답	66	화순군		
55	화순	도암면 왕정리	188-3	답	33	화순군		
56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8-6	답	25	오춘섭	전라남도	
57	화순	도암면 왕정리	188-2	도	155	전라남도	전라남도	
58	화순	도암면 왕정리	398-3	답	69	오춘섭	전라남도	
59	화순	도암면 왕정리	187-12	전	509	양호승	전라남도	
60	화순	도암면 왕정리	182-2	전	260	이보임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 초	최 종	
61	회순	도암면 왕정리	457	구	695.4	농림부		
62	회순	도암면 왕정리	439-4	답	239.4	양용선	전라남도	
63	회순	도암면 왕정리	459	구	168.8	농림부		
64	회순	도암면 왕정리	458	도	341.2	농림부		
65	회순	도암면 왕정리	440-7	답	92.7	김맹례	전라남도	
66	회순	도암면 왕정리	440-6	답	745.2	김맹례	전라남도	
67	회순	도암면 왕정리	456	구	1230.6	농림부		
68	회순	도암면 왕정리	441-5	답	36.8	회순군		
69	회순	도암면 왕정리	441-6	답	181.4	김상옥	전라남도	
70	회순	도암면 왕정리	453	구	112.1	농림부		
71	회순	도암면 왕정리	441-7	답	247.7	김상옥	전라남도	
72	회순	도암면 왕정리	441-8	답	229.3	김상옥	전라남도	
73	회순	도암면 왕정리	454	도	554.1	농림부		
74	회순	도암면 왕정리	149-1	천	445	김동수	전라남도	
75	회순	도암면 왕정리	455	구	166.1	농림부		
76	회순	도암면 왕정리	147-3	답	239	회순군		
77	회순	도암면 왕정리	147-2	도	86	회순군		
78	회순	도암면 왕정리	145-2	도	10	회순군		
79	회순	도암면 왕정리	136-3	도	34	회순군		
80	회순	도암면 왕정리	136-7	천	26	회순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81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6-4	도	93	화순군		
82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6-6	천	22	화순군		
83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6-8	도	299	화순군		
84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6-1	답	800	고광해		
85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6-5	답	617	화순군		
86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6-2	천	57	화순군		
87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5-2	도	73	화순군		
88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5-1	답	43	화순군		
89	화순	도암면 왕정리	431	도	1031	건설부		
90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4-3	전	76	화순군		
91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4-1	전	50	화순군		
92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4-2	도	96	화순군		
93	화순	도암면 왕정리	92-2	도	87	화순군		
94	화순	도암면 왕정리	92-1	임	9	조홍수	전라남도	
95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3-2	도	17	화순군		
96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3-3	임	52	화순군		
97	화순	도암면 왕정리	433	구	2218	건설부		
98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2-1	답	109	화순군		
99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2-2	도	20	장동신	전라남도	
100	화순	도암면 왕정리	131-1	전	192	화순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101	화순	도암면 왕정리	425	도	549	건설부		
102	화순	도암면 왕정리	430-2	천	2435	건설부		
103	화순	도암면 왕정리	121-3	전	221	화순군		
104	화순	도암면 왕정리	121-2	도	53	박난순	전라남도	
105	화순	도암면 왕정리	120-1	전	45	화순군		
106	화순	도암면 왕정리	118-2	도	76	화순군		
107	화순	도암면 왕정리	119-2	도	179	화순군		
108	화순	도암면 왕정리	119-1	대	159	화순군		
109	화순	도암면 왕정리	118-3	답	434	화순군		
110	화순	도암면 봉하리	563-1	답	2386.5	한복례		
111	화순	도암면 봉하리	478-2	도	169	화순군		
112	화순	도암면 봉하리	478-3	답	396	화순군		
113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4	도	182	건설부		
114	화순	도암면 봉하리	565	구	463.2	농림부		
115	화순	도암면 봉하리	472-2	도	73	김본국제	전라남도	
116	화순	도암면 봉하리	472-3	답	819	화순군		
117	화순	도암면 봉하리	564-1	답	48.5	김홍열	전라남도	
118	화순	도암면 봉하리	569	구	131	농림부		
119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2-2	구	16	건설부		
120	화순	도암면 봉하리	461-2	답	305	김상욱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121	회순	도암면 봉하리	531	도	367	건설부		
122	회순	도암면 봉하리	530	구	236	건설부		
123	회순	도암면 봉하리	457-1	대	416	고호균	전라남도	
124	회순	도암면 봉하리	455	전	327	전라남도	전라남도	
125	회순	도암면 봉하리	454	답	258	고호균		
126	회순	도암면 봉하리	453-1	대	71	김홍열	전라남도	
127	회순	도암면 봉하리	452	답	291	전라남도	전라남도	
128	회순	도암면 봉하리	557-1	답	30.9	박동남	전라남도	
129	회순	도암면 봉하리	529-2	도	78	건설부		
130	회순	도암면 봉하리	562	도	672	농림부		
131	회순	도암면 봉하리	558-11	답	344.5	고광식	전라남도	
132	회순	도암면 봉하리	558-12	답	108.4	고광식	전라남도	
133	회순	도암면 봉하리	558-13	답	510.7	고재욱	전라남도	
134	회순	도암면 봉하리	558-14	답	186.2	미등기(고재욱)	전라남도	
135	회순	도암면 봉하리	558-15	답	139.3	미등기(고재욱)	전라남도	
136	회순	도암면 봉하리	558-16	답	422.6	고재욱	전라남도	
137	회순	도암면 봉하리	558-17	답	412	고태영	전라남도	
138	회순	도암면 봉하리	529	도	220	건설부		
139	회순	도암면 봉하리	558-18	답	255.8	고판례	전라남도	
140	회순	도암면 봉하리	558-19	답	137.1	고판례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141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8-20	답	458.7	고판례	전라남도	
142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9	구	1024	농림부		
143	화순	도암면 봉하리	527	도	259	건설부		
144	화순	도암면 봉하리	528	구	238	건설부		
145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7-8	천	3	화순군		
146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7-3	천	252	김진숙		
147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7-7	천	43	화순군		
148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7-6	답	6	화순군		
149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7-9	답	154	김소자	전라남도	
150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7-5	답	3	화순군		
151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7-4	천	70	화순군		
152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7-1	천	115	김진숙		
153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5-4	천	62	화순군		
154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5-2	천	34	김경재		
155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5-3	답	26	화순군		
156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5-5	답	73	김종채	전라남도	
157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2-1	답	45	화순군		
158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2-2	답	101	전라남도	전라남도	
159	화순	도암면 봉하리	422	답	294	전라남도	전라남도	
160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6	구	183.7	농림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161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3-10	답	334.6	김계일	전라남도	
162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4	도	1207	농림부		
163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3-11	답	116.4	김민수	전라남도	
						김소자		
						김광수		
						김계수		
164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3-12	답	118.2	김종대	전라남도	
165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3-13	답	230.8	김상태	전라남도	
						김상진		
166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3-14	답	176.1	강정주	전라남도	
167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3-15	답	83.3	강정주	전라남도	
168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3-16	답	61.7	김귀남	전라남도	
169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8-17	답	132.1	강민기	전라남도	
170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3-18	답	53.8	강민식	전라남도	
171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5	구	2102	농림부		
172	화순	도암면 봉하리	200-1	학	60	전라남도교육감		
173	화순	도암면 봉하리	200	학	7225	전라남도교육감		
174	화순	도암면 봉하리	197-4	임	706	김충남	전라남도	
175	화순	도암면 봉하리	197-2	임	187	전라남도	전라남도	
176	화순	도암면 봉하리	197-3	답	121	전라남도	전라남도	
177	화순	도암면 봉하리	196-1	답	282	박종복	전라남도	
178	화순	도암면 봉하리	195-3	답	341	김민수	전라남도	
						김연화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179	회순	도암면 봉하리	195-2	천	50	김윤곤	전라남도	
180	회순	도암면 봉하리	194-3	답	137	양옥순	전라남도	
181	회순	도암면 봉하리	194-2	천	56	김경환	전라남도	
182	회순	도암면 봉하리	192-3	전	390	전라남도	전라남도	
183	회순	도암면 봉하리	192-1	전	172	전라남도	전라남도	
184	회순	도암면 봉하리	192-2	천	496	김경환	전라남도	
185	회순	도암면 봉하리	519	천	15934	건설부		
186	회순	도암면 봉하리	산145-1	천	450	강신구	전라남도	
187	회순	도암면 봉하리	산145-2	임	234	김권	전라남도	
188	회순	도암면 봉하리	191-1	천	478	전라남도	전라남도	
189	회순	도암면 봉하리	191	천	345	전라남도	전라남도	
190	회순	도암면 봉하리	190	임	1230	기획재정부		
191	회순	도암면 봉하리	185-2	전	77	김학수	전라남도	
192	회순	도암면 봉하리	185-1	천	39	전라남도	전라남도	
193	회순	도암면 봉하리	184	전	278	김학수		
194	회순	도암면 봉하리	503	천	18941	건설부		
195	회순	도암면 봉하리	산144-1	임	220	정재구	전라남도	
196	회순	도암면 봉하리	164-1	천	195	전라남도	전라남도	
197	회순	도암면 봉하리	164-2	답	298	손성수	전라남도	
198	회순	도암면 봉하리	504	도	417	건설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199	화순	도암면 봉하리	506	구	9537	건설부		
200	화순	도암면 봉하리	64	답	745	전라남도	전라남도	
201	화순	도암면 봉하리	64-1	답	267	전라남도	전라남도	
202	화순	도암면 봉하리	65-1	전	186	최호	전라남도	
203	화순	도암면 봉하리	66-1	답	257	최호	전라남도	
204	화순	도암면 봉하리	60-1	답	30	손성식	전라남도	
205	화순	도암면 봉하리	67-1	임	149	전라남도	전라남도	
206	화순	도암면 봉하리	68-3	임	74	박교찬	전라남도	
207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2	구	759	농림부		
208	화순	도암면 봉하리	540-4	답	143.3	박병교	전라남도	
209	화순	도암면 봉하리	540-5	답	1209.2	손용호	전라남도	
						강경미		
210	화순	도암면 봉하리	산82-1	임	142	손대근		
211	화순	도암면 봉하리	160-2	전	8	김재고	전라남도	
			160-3					
212	화순	도암면 봉하리	547	구	2082.6	농림부		
213	화순	도암면 봉하리	161	전	1358	전라남도	전라남도	
214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1	도	489.6	농림부		
215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9-6	답	705.7	손당호	전라남도	
						손원균		
216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9-5	답	429.7	손성식	전라남도	
217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9-4	답	324.3	김영관	전라남도	
218	화순	도암면 봉하리	155-1	전	314	전라남도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219	화순	도암면 봉하리	550	구	1769	농림부		
220	화순	도암면 봉하리	546	도	2591.4	농림부		
221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8	답	781	김정곤	전라남도	
222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7-4	답	1467.2	손정삼	전라남도	
223	화순	도암면 봉하리	549	구	26.2	농림부		
224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7-3	답	1042.6	박명옥	전라남도	
225	화순	도암면 봉하리	548	구	233.9	농림부		
226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6-1	답	574.6	전라남도	전라남도	
227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6-2	답	1669.3	전라남도	전라남도	
228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6-6	답	698.1	전라남도	전라남도	
229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6-7	답	458.4	박병교	전라남도	
230	화순	도암면 봉하리	545	구	1416.7	농림부		
231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5-10	답	442.8	양선자	전라남도	
232	화순	도암면 봉하리	541	도	477.9	농림부		
233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5-9	답	157.6	박교찬	전라남도	
234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5-8	답	196.4	박교찬	전라남도	
235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5-7	답	175.4	황은주	전라남도	
236	화순	도암면 봉하리	535-6	답	106	김형석	전라남도	
						김장근		
						김희근		
						조연옥		
237	화순	도암면 봉하리	131-1	답	97	도암면 봉하마을회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 초	최 종	
238	회순	도암면 봉하리	130-4 130-5	답	15 55	전라남도	전라남도	
239	회순	도암면 봉하리	120-1	대	42	봉순용	전라남도	
240	회순	도암면 봉하리	130-2 130-3	답	103 151	김대중	전라남도	
241	회순	도암면 봉하리	500-3 500-4	도	162 25	건설부		
242	회순	도암면 봉하리	산9	임	893	김대중		
243	회순	도암면 봉하리	산18-1	임	129	윤상용	전라남도	
244	회순	도암면 봉하리	산52-1 산52-2	임	41 21	윤대섭	전라남도	
						윤채룡		
						윤재선		
						윤현암		
245	회순	도암면 호암리	827-7	천	519.4	전라남도	전라남도	
246	회순	도암면 호암리	827-6	천	992.7	전라남도	전라남도	
247	회순	도암면 호암리	827-5	천	984.9	전라남도	전라남도	
248	회순	도암면 호암리	868	구	866	농림부		
249	회순	도암면 호암리	867-2	구	1162	농림부		
250	회순	도암면 호암리	826-10	천	1471.9	전라남도	전라남도	
251	회순	도암면 호암리	826-9	천	664.1	전라남도	전라남도	
252	회순	도암면 호암리	826-2	답	61.1	전라남도	전라남도	
253	회순	도암면 호암리	826-12	답	401.9	전라남도	전라남도	
254	회순	도암면 호암리	826-11	답	589.6	전라남도	전라남도	
255	회순	도암면 호암리	867-1	구	365	농림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 초	최 종	
256	회순	도암면 호암리	826-8	천	574	전라남도	전라남도	
257	회순	도암면 호암리	866	구	329	농림부		
258	회순	도암면 호암리	867	구	159.3	농림부		
259	회순	도암면 호암리	864	도	182	농림부		
260	회순	도암면 호암리	812	도	2534	건설부		
261	회순	도암면 호암리	781	천	90846	건설부		
262	회순	도암면 행산리	277	도	3060	건설부		
263	회순	도암면 행산리	268-2	구	13863	건설부		
264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6-3	대	278	전라남도	전라남도	
265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6-2	도	43	김남제	전라남도	
266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6-1	대	185	전라남도	전라남도	
267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4-1	답	358	전라남도	전라남도	
268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4-2	도	20	김병록	전라남도	
269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5	대	417	김현규		
270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2	대	691	김현규		
271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3-3	도	7	김상홍		
272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3-5	답	38	김상홍		
273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4-3	천	39	전라남도	전라남도	
274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3-4	천	311	전라남도	전라남도	
275	회순	도암면 행산리	173-2	도	69	김상홍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최종	
276	화순	도암면 행신리	143-2	도	13	한재일	전라남도(2/3)	
						한재철		
						한재만		
277	화순	도암면 행신리	142-2	도	7	백석가신	전라남도	
278	화순	도암면 행신리	278	도	122	전라남도	전라남도	

봉학천 시설물 관리자 지정

공종	세부	위치	시설명	단위	수량	관리자 지정			비고
						시군명	실과명	팀명	
하상 시설공	가동보 (5개소)	1공구 NO.0+044	봉학2취입보	개소	1	화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1+110	봉학8취입보	개소	1	화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1+311	봉학보	개소	1	화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4+400	봉학2취입보	개소	1	화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3+746	신기보	개소	1	화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취수문기준
	고정보 (16개소)	1공구 NO.0+262	봉학11취입보	개소	1	화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0+410	봉학10취입보	개소	1	화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0+675	봉학9취입보	개소	1	나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0+921	도종도보	개소	1	화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1+483	봉학7취입보	개소	1	나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1+600	진동보	개소	1	화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1+893	봉학6취입보	개소	1	나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2+405	척동보	개소	1	나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2+739	덕동보	개소	1	나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3+087	고산보	개소	1	나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3+332	봉학5취입보	개소	1	화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3+431	봉학4취입보	개소	1	나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3+949	봉학신설1취입보	개소	1	나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취수문기준
		1공구 NO.4+480	봉학1취입보	개소	1	화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취수문기준
	2공구 NO.0+116	행산2보	개소	1	나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취수문기준	
2공구 NO.0+412	행산1보	개소	1	나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취수문기준		
집관	1공구NO.0+608	D 600mm	m	14.3	화순군	건설과	농업기반팀		
포장공	아스콘 포장	좌안	1공구NO.1+312-4+280	B=6.5, L=780	a	60.9	나주시	건설과	도로관리팀
		우안	1공구NO.0+030-4+280 2공구NO.0+640-0+680	B=6.5, L=850	a	66.4	화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교량공	RC라멘교	1공구NO.0+054(14.6m)	봉학9무명교	개소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RC라멘교	1공구NO.0+113(13.0m)	봉학8무명교	개소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RC라멘교	1공구NO.0+226(14.2m)	봉학7무명교	개소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합성형라멘교	1공구NO.0+830(18.4m)	봉학6무명교	개소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합성형라멘교	1공구NO.1+065(20.5m)	봉학5무명교	개소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합성형라멘교	1공구NO.1+383(22.2m)	봉 학 교	개소		화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공 종	세부	위 치	시설명	단위	수량	관리자 지정			비고
						시군명	실과명	팀명	
	하이콤파멘교	1공구NO.1+842(22.2m)	봉학3무명교	개소		화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PIA교대교량	1공구NO.2+064(24.5m)	봉학2무명교	개소		화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ATA합성교	1공구NO.2+397(28.1m)	척 등 교	개소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DB거더교	1공구NO.3+108(37.1m)	하 수 교	개소		화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DB거더교	1공구NO.3+586(43.0m)	봉학1무명교	개소		화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2경간UNT교	1공구NO.4+280(43.5m)	봉 하 교	개소		화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RC박스교	2공구NO.0+140(8.2m)	행산3무명교	개소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RC박스교	2공구NO.0+549(8.8m)	행산2무명교	개소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RC박스교	2공구NO.0+663(8.7m)	행산1명교	개소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부대공	화장실	우안	1공구NO.0+300		개소	1	나주시		(마을 관리)
	버스 승강장	좌안	1공구NO.1+400	4.0×2.2	개소	1	나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
			1공구NO.3+600	4.0×2.2	개소	1			
	조경 식재	좌안	NO.1+276~4+068	영산홍(H0.3*W0.3) 배롱나무(H2.5*R8) 금목서(H2.0*W1.0) 무궁화(H2.0* R4)	주	12,015 108 77 108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우안				NO.4+112~4+360	꽃잔디(8cm) 영산홍(H0.3*W0.3)	m ² 주			

전라남도 고시 제2021-348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영암군 소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영암군 소재)
2. 고시내용
 - 가. 대상문화재 : 1개소
 - 1) 영암군 소재 : 1개소(변경)

연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1	전라남도 기념물 제40호	김원장군 묘소 및 신도비	전남 영암군 시종면 민수리205-7 외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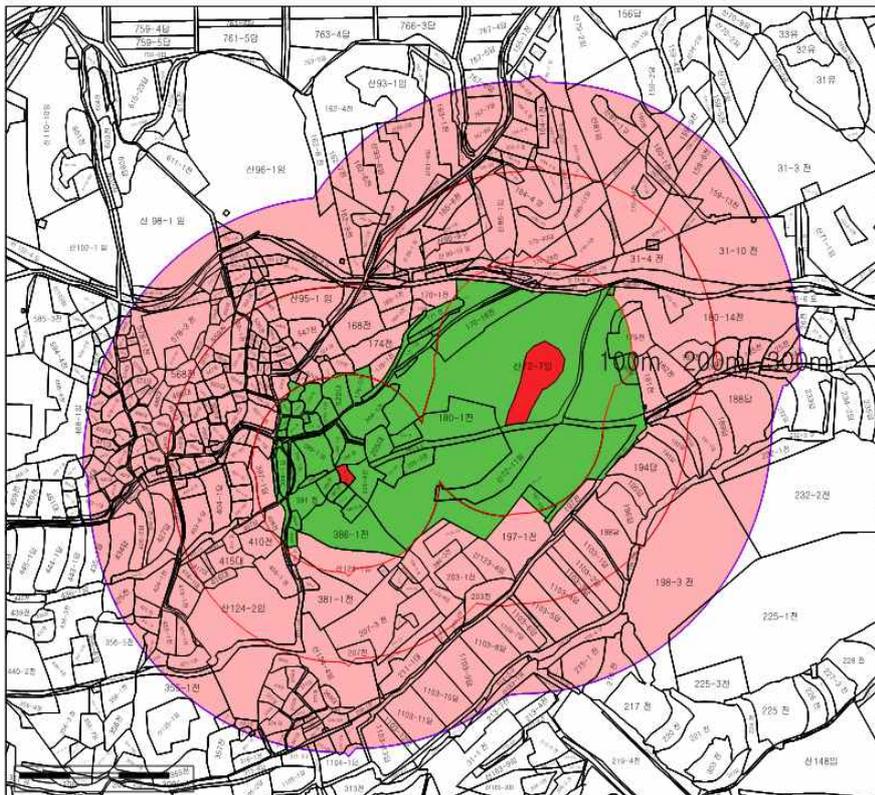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향검토를 생략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전라남도 기념물 제40호 김완장군 묘소 및 신도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역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4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타 전라남도지사 허가사항(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축척  A3 : 1/4,000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전라남도 시도기념물 제40호
김완장군묘소및신도비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205-7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산72-7

범례

- 도시정문화재 보호구역
- 100 ~ 200(m)
- 300(m)

[허용기준구역]

- 1 구역
- 2 구역
- 3 구역
- 4 구역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확인처

-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문화재보존관리지도(<http://gis-heritage.go.kr/re>)에서 열람 가능

3. 기준 시행일 : 2021. 7. 29.

4. 연 락 처

○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주 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연락처 : 전화 061-286-5331

○ 영암군 문화관광과

- 주 소 : (우)(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연락처 : 전화 061-470-2199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0호

영산강 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4구간)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고시

영산강 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4구간)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 등의 일괄 지정 · 승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사업명 : 영산강~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 4구간
-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일원
- 사업내용 : L = 0.78km, B = 10m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 무안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하나로써 무안군 영산강 강변도로와 청계/몽탄권내 만남의길 개설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등에 기여하고자 기반시설 확충

나. 시행기간 : 2014 ~ 2022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무안군수

나. 사업시행방식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동·식물상

1) 육상·육수식물상 및 식생

- 훼손수목 처리방안 수립, 식생 피복계획, 비산먼지 최소화

2) 육상동물상

- 번식기 및 야간공사 지양, 포획·남획 방지, 교육 실시, 이동로 및 서식처 확보

3) 육수동물상

- 수생태계 교란 최소화, 토사유출방지계획(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4) 특정야생생물

- 생태터널(L=40m) 설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나. 대기질

1) 비산먼지 저감대책

- 공사시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토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및 이동속도 제한, 토사 상·하적 장소 주변에 살수시설 설치, 토사 적치시 방진덮개, 방진망 설치,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운영시에 환경정화수중 식재 검토

다. 수질

- 공사시에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오탁방지막 설치, 오수는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 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하관정 원상복구 시행, 수질오염사고 방지대책 수립
- 운영시에 수로암거 설치 등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라. 토양

- 공사시에 주변 토양오염 유발시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관심 유도, 오염토양 발견시 오염토양 중화·복원기술에 의해 복원, 폐유보관시설, 분리수거, 개인하수 처리시설 등 설치, 시추공 원상복구, 성토재는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사용, 비옥토 재이용, 화약 과다사용 억제, 관리 철저, 잔류화약 수거

마. 지형·지질

- 비탈면 보강대책 수립
 - 절토사면부 : 옹벽 적용
 - 사면의 특성에 따른 비탈면 보호공법 선정
- 현장여건을 고려한 비탈면 보호공법 수립
- 영산기맥 저축구간
 - 생태터널 설치(능선축 보전)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설폐기물 : 처리용역 분리발주 및 위탁처리
- 지정폐기물 : 폐유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및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 : 해당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임목폐기물 : 재활용 및 위탁처리

사. 소음·진동

- 공사시(장비 가동시)
 - 특정공사 사전신고, 공사투입인원 교육,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준수 등
 - 가설방음판넬 설치(3~6m), 장비 용량규제, 장비 교체투입
- 공사시(발파시)

- 장약량 조절 및 공법 변경, 시험발파 실시

○ 운영시(도로교통소음)

- 방음벽 설치, 저소음 포장재 시공, 과속방지턱, 감시카메라, 과속 규제 안내판 설치 등 차량 속도 규제

아. 경관

○ 사면계획

- 절토면 최소화 및 녹화공법 계획

○ 친환경적 옹벽 계획

○ 생태터널 계획

5. 토지이용계획

가. 기본방향

○ 무안군의 동서축 중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

○ 본 노선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국토교통부) 해설 및 지침”에 따라 지역지역 국지도도로로 분류하고, 기하구준은 산지부와 평지부로 구분하여 설계

○ 도로 선형계획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차량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정성을 도모

○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주변의 자연을 보호하는 친환경 개발 유도

나. 설계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국토교통부) 해설 및 지침에 따라 지방지역 국 도로로 계획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01	10	집산 도로	780	몽탄면 구산리 83-3	몽탄면 구산리 196-4	일반도로			

8. 재원도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영산강~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14,431백만원이며, 금회 시행하는 4구간의 사업비는 2,543백만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아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시행 할 계획임

구분	총사업비	재원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국비	지방비	민자	
영산강~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 4구간	2,543	2,543 (100%)	-	-	

나. 연도별 투자계획

○ 4구간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0년 ~ 2022년까지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임

구분	총사업비	사업비 집행계획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543	494	1,540	509	
공사비	2,249	200	1,540	509	
용지비	287.5	287.5			
생태계보전협력금	65	65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영산강~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보상계획서 등을 작성
-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은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관계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세부목록(첨부1)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가. 투자개발에 의한 파급효과

- 영산강~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에 따른 투자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파급효과, 고용파급효과, 소득파급효과, 부가가치파급효과, 조세파급효과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생산 파급효과	고용 파급효과	소득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조세 파급효과	비고
만남의길 조성	35,904	393	7,688	14,967	1,232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01	10	780	집산 도로	몽탄면 구산리 83-3	몽탄면 구산리 196-4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 1-01호	노선신설 B=10m, L=780m	영산강-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 4구간에 따른 노선신설

【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무안군수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2. 사업의 명칭, 위치, 목적

가. 명 칭 : 영산강~송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 4구간

나.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일원

다. 목 적 : 본 과업은 2013년 8월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의해 확정된 무안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하나로써 영산강 강변도로와 청계/몽탄권내 만남의길 개설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 2022. 12. 31.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무안군수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2.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면적, 사업 시행 기간

가. 명 칭 : 영산강~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 4구간

나. 목 적 : 본 과업은 2013년 8월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의해 확정된 무안 지역개발사업으로 영산강 강변도로와 청계농공단지, 석정포 문화공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동서축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환경의 질을 제고하며, 지역주민의 편의, 교통 안전을 도모코자 함.

다.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일원

라. 면 적 : 16,312㎡

마.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 2022. 12. 31.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 게재 생략

4.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공사비	보상비	기타	비 고
영산강-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 4구간	2,543	2,249	287.5	6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다음

6.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의제 처리 사항

7. 기타 관계서류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 무안군 지역개발과(☎061-450-5779)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일련 번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몽탄	구산	83-3	도	380.0	7.0	무안군		
2	몽탄	구산	203-3	도	40.0	40.0	무안군		
3	몽탄	구산	204-5	도	11.0	11.0	무안군		
4	몽탄	구산	203	답	264.0	200.0	김성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87 608-1302	
5	몽탄	구산	204-2	답	93.0	93.0	김성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87 608-1302	
6	몽탄	구산	81	답	1590.0	65.0	김성태	무안군 몽탄면 원구산길 53	몽탄농협 근저당
7	몽탄	구산	80	답	786.0	73.0	김성태	무안군 몽탄면 원구산길 53	
8	몽탄	구산	79	답	701.0	479.0	장용희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405	
9	몽탄	구산	611-3	구	514.0	86.0	농림축산식품부		
10	몽탄	구산	75	답	1144.0	922.0	문정남	무안군 몽탄면 원구산길 61-10	몽탄농협 근저당
11	몽탄	구산	74	답	1889.0	600.0	장동률	광양시 마동 1031 606-301	
12	몽탄	구산	74-3	답	87.0	87.0	국토교통부		
13	몽탄	구산	612	도	2102.0	26.0	국토교통부		
14	몽탄	구산	613-1	도	10.0	10.0	국토교통부		
15	몽탄	구산	74-2	답	4.0	4.0	국토교통부		
16	몽탄	구산	613-3	도	50.0	50.0	국토교통부		
17	몽탄	구산	205-22	구	189.0	189.0	농림축산식품부		
18	몽탄	구산	195-14	도	136.0	136.0	국토교통부		
19	몽탄	구산	612-3	도	219.0	37.0	국토교통부		
20	몽탄	구산	612-5	도	133.0	123.0	국토교통부		
21	몽탄	구산	612-4	도	171.0	78.0	국토교통부		
22	몽탄	구산	338	답	592.0	177.0	장재영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834-33	
23	몽탄	구산	333	전	823.0	391.0	장진오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405	
24	몽탄	구산	331	전	2,351.0	1,328.0	장진오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405	
25	몽탄	구산	614-12	도	1,257.0	57.0	국토교통부		
26	몽탄	구산	421	대	228.0	16.0	장차산외 1인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406	
27	몽탄	구산	422	답	450.0	180.0	구산2리마을회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422	
28	몽탄	구산	423-1	전	195.0	158.0	신복순	무안군 몽탄면 명산리 63	
29	몽탄	구산	423	전	175.0	94.0	신복순	무안군 몽탄면 명산리 63	

일련 번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30	몽탄	구산	424	대	539.0	33.0	고명연	목포시 텃골로19, 203-702	
31	몽탄	구산	433	전	1,028.0	661.0	고명연	목포시 텃골로19, 203-702	
32	몽탄	구산	434	답	645.0	645.0	곽성남	무안군 몽탄면 원구산길 99-7	
33	몽탄	구산	458	답	1,441.0	512.0	곽성남	무안군 몽탄면 원구산길 99-7	
34	몽탄	구산	465	답	2,271.0	1,264.0	장수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 극동아파트 2-603	
35	몽탄	구산	463	답	1,236.0	840.0	조일선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735-1	
36	몽탄	구산	614-3	도	754.0	68.0	국토교통부		
37	몽탄	구산	195-15	도	3,373.0	2,011.0	국토교통부		
38	몽탄	구산	204-3	답	145.0	145.0	국토교통부		
39	몽탄	구산	195-5	도	2,352.0	1,317.0	국토교통부		
40	몽탄	구산	79-2	답	16.0	16.0	국토교통부		
41	몽탄	구산	78-2	답	81.0	81.0	국토교통부		
42	몽탄	구산	78-1	답	279.0	279.0	장용희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405	
43	몽탄	구산	611-6	구	6.0	6.0	국토교통부		
44	몽탄	구산	75-2	답	96.0	96.0	국토교통부		
45	몽탄	구산	205-14	구	3,155.0	299.0	농림축산식품부		
46	몽탄	구산	206-4	구	798.0	38.0	농림축산식품부		
47	몽탄	구산	196-2	도	1,167.0	318.0	국토교통부		
48	몽탄	구산	179-28	답	117.0	34.0	국토교통부		
49	몽탄	구산	179-29	답	183.0	183.0	국토교통부		
50	몽탄	구산	179-12	답	3,139.0	420.0	노효순	무안군 몽탄면 원구산길 103-21	
51	몽탄	구산	205-23	구	8,420.0	893.0	농림축산식품부		
52	몽탄	구산	339-1	답	3.0	3.0	국토교통부		
53	몽탄	구산	331-4	답	96.0	57.0	국토교통부		
54	몽탄	구산	330-1	전	207.0	207.0	장진오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405	
55	몽탄	구산	330-2	답	120.0	62.0	국토교통부		
56	몽탄	구산	331-5	답	29.0	29.0	국토교통부		
57	몽탄	구산	196-4	도	889.0	8.0	국토교통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의제처리 사항

1. 군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01	10	집산 도로	780	몽탄면 구산리 83-3	몽탄면 구산리 196-4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 1-01호선	노선 신설 L = 780m B = 10m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산강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 4구간 신설

2. 군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동일함에 따라 게재 생략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1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표자	산림사업의 종 류	등록번호	소재지	등 록 취소일자	등록취소 사 유
(주)휴먼앤숲	설규태	도시림등 조성	전남2020-031	나주시	' 21. 7. 23.	폐업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2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사업계획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담양군 지적재조사지구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 1. 대 상 사 업 : 2021년 담양군 지적재조사사업
- 2. 사업시행자 : 담양군수
- 3. 사업지구 변경내용

사군	지구명	위 치	변경내용				비 고 (증감률%)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담양	담양읍 가산1지구	담양읍 가산리 427-1번지 일원	필지수	260	288	28	증 10.8%
			면적(㎡)	114,063	136,561	22,498	증 19.7%
	대전면 행성2지구	대전면 행성리 1-1, 성산리 10-1번지 일원	필지수	348	359	11	증 3.2%
			면적(㎡)	149,883	152,261	2,378	증 1.6%

- 4. 변경사유 : 토지이동(분할), 사업지구 필지 추가로 인한 면적 변경
- 5. 토지조서 : 도보계재 생략 (해당 시·군청에 비치)
- 6. 지정도면 : 도보계재 생략 (해당 시·군청에 비치)
- 7. 열람부서 : 담양군청 열린민원과 공간정보팀 ☎ 061-380-3269
- 8.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1-764호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다산안전대상 심사 제외 대상 중 ‘피한정후견인’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위반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삭제 요청함에 따라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제공·공유에 대한 각각의 동의를 세분화 하여 서식을 구체화

3. 주요내용

- 제5조(심사기준 등) 제2항 : 심사제외대상
 - 공적내용 공개검증 결과 공적을 부풀리거나 거짓을 기재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삭제)
- 제6조(누리집에 공개하는 기본정보)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변경
 - 개인정보의 직접 이용·활용과, 제3자 정보 제공·공유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이용·활용 사항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을 명시한 동의서로 변경

4. 개정안

-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다음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전화 : 061-286-3222, 팩스 : 061-286-4792, E-메일 : skylife@korea.kr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6조제1호 중 “생년월일, 주소”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제 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심사 및 수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동의자의 성명, 주민번호, 소속, 주소, 연락처, 이메일, 공적내용 등 제출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당해연도 다산안전대상 수상자 결정 후 1년 * 다만 수상자의 경우 관련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의 기록 영구 보존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다산안전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개검증자료를 열람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다산안전대상 수상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의 허위사실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공적내용, 수공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다산안전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개검증 기간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서명 또는 인)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자료)를 전라남도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는 경우 심사 및 수상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1-770호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1. 특구 개요

- 가. 명 칭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나.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 혁신도시 등
 - * 특구실증구간 :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산업단지 등, 동수동 덕산리 혁신산단, 봉황로 11-19, 왕곡면 장신리 대기동, 용산동 일원 및 빗가람동 일원
- 다. 면 적 : 약 19.94km²
- 라. 지정기간 : 2019. 12. 6. ~ 2023. 12. 5.(4년)
- 마. 지정목적 : 규제 제약 없는 직류(DC)산업 육성으로 新송배전 전력망 기술 확보 및 지역 투자 유치·일자리 확대

2.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열람

- 가. 열람기간 : 2021. 7. 29.(목) ~ 8. 27.(금) / 30일간
(09: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나. 열람장소 :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 다. 방 법 : 비치된 계획(안) 방문 열람 * 전자파일, 복사본 제공 불가

3.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 내용

○ 실증특례 기간 변경(연장)

세부사업명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특례 기간 2020. 1. 1. ~ 2021. 12. 3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특례 기간 2020. 1. 1. ~ 2023. 12. 5.(4년) 	발전원 변경 및 외산 부품 조달 등으로 MVDC 스테이션 구축 및 실증 지연됨. 구축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 유의미한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계절별(봄·여름·가을·겨울) 실증 기간 및 규제 정비 기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연장 실증특례(2건) ① 발전소-변전소 간 직류전기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 전송용량 60MW 실증특례 ② 직류전선로 시설 시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특례 			

○ 특구면적 조정

세부사업명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DC 실증	■나주 혁신산단, 혁신도시 등 19.94km ²	■나주 혁신산단, 혁신도시 등 12.10km ²	특구사업자(민간발전사업자*) 해지로 관련 구역을 특구 면적에서 제외 * 영산강발전일, 영산강발전이, 영산강발전삼, 영산강발전사, 탑솔라(주) (총 해지 면적 7.84km ²)

○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변경

세부사업명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DC 실증	■(주)그린테크 대표자명 : 이숙희, 오성민 ■한국전력공사 대표자명 : 김종갑	■(주)그린테크 대표자명 : 오성민 ■한국전력공사 대표자명 : 정승일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경미한 변경 신청

○ 특구사업자 주소 변경

세부사업명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DC 실증	■가나이엔지(주)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도민길 39-15, 201호 (빛가람동)	■가나이엔지(주)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30, 2층 (빛가람동)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경미한 변경 신청

* 규제자유특구 주요 사업내용은 변동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서면 또는 온라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1. 8. 27.(금) 18:00까지 (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제 출 처

○ 서면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에너지신산업과

○ 이메일 : uata7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서			
주소			
성명		연락처	

상기와 같이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 .

제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p>[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와 같이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p>
동의자: (인)

목포시 고시 제2021-11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목포가톨릭대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목포시 석현동 894-1번지에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사업명: 목포가톨릭대학교 증축공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7. 29.

목포시장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항 목	구 분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석현동 894-1번지(목포가톨릭대학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사업명칭 : 목포가톨릭대학교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 20,692.0㎡ ○ 건축면적 : 당초 3,297.71㎡ ⇒ 변경 3,534.71㎡(증 237.0㎡) ○ 연 면 적 : 당초 12,529.57㎡ ⇒ 변경 12,766.57㎡(증 237.0㎡) ○ 금회사업분 : 창고(4개동) 증축																															
		<table border="1"> <thead> <tr> <th>동 별</th> <th>건축면적(㎡)</th> <th>연 면 적(㎡)</th> <th>용 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부속2동</td> <td>59.36</td> <td>59.36</td> <td>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td> <td></td> </tr> <tr> <td>부속3동</td> <td>42.64</td> <td>42.64</td> <td>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td> <td></td> </tr> <tr> <td>부속4동</td> <td>50.00</td> <td>50.00</td> <td>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td> <td></td> </tr> <tr> <td>부속5동</td> <td>85.00</td> <td>85.00</td> <td>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td> <td></td> </tr> <tr> <td>합 계</td> <td>237.00</td> <td>237.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동 별	건축면적(㎡)	연 면 적(㎡)	용 도	비 고	부속2동	59.36	59.36	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		부속3동	42.64	42.64	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		부속4동	50.00	50.00	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		부속5동	85.00	85.00	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		합 계	237.00	237.00			
	동 별	건축면적(㎡)	연 면 적(㎡)	용 도	비 고																												
	부속2동	59.36	59.36	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																													
	부속3동	42.64	42.64	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																													
	부속4동	50.00	50.00	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																													
	부속5동	85.00	85.00	교육연구시설 (대학교-창고)																													
합 계	237.00	237.0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97(석현동) ○ 성명 : 학교법인골롬반학원(대표자 : 김희중)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21. 7. 29. ○ 준공예정일 : 2022. 6. 30.																															

항 목	구 분	고 시 내 용	비 고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94-1번지 (면적: 20,692.0㎡, 지목: 학교용지, 소유권: 학교법인골롬반학원)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생략(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완료)		○ 열람기간 : 2021. 7. 1. ~ 2021. 7. 15.(14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의견없음
9. 기타 문의		○ 전화 문의 : 061-270-3447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20,692.0	20,692.0					
1	석현	894-1	학교 용지	20,692.0	20,692.0	학교법인 골롬반학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97(석현동)			

목포시 고시 제2021-119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3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목포시 석현동 940-9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사업명: 석현지구 지장관로 이설공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7. 29.

목포시장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항 목	구 분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석현동 940-9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 사업명칭 : 석현지구 지장관로 이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수도공급설비(3호) :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이설										
		<table border="1"> <thead> <tr> <th>도시계획시설명</th> <th>결정연장</th> <th>금회시행</th> <th>폭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공급설비3</td> <td>L=742.0m</td> <td>L=442.0m</td> <td>B=3.5m</td> <td>중로2-69호선 중복결정</td> </tr> </tbody> </table>	도시계획시설명	결정연장	금회시행	폭 원	비 고	수도공급설비3	L=742.0m	L=442.0m	B=3.5m	중로2-69호선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명	결정연장	금회시행	폭 원	비 고								
수도공급설비3	L=742.0m	L=442.0m	B=3.5m	중로2-69호선 중복결정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지천길 142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1. 7. 29. ○ 준공예정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생략(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8. 실시계획열람공고 (완료)		○ 공고기간 : 2021. 7. 1. ~ 2021. 7. 15.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의견없음									
9. 기타 문의		○ 문의전화 : 061- 270 - 3447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계				1,589	1,589					
1	석현	940-9	전	26	26	국유지	국토교통부			
2	석현	919-15	수	11	11	공유지	목포시			
3	석현	941-19	수	1	1	공유지	목포시			
4	석현	1031-22	구	14	14	공유지	목포시			
5	석현	911-6	수	69	69	국유지	환경부			
6	석현	911-8	답	95	95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7	석현	1031-10	구	21	21	공유지	목포시			
8	석현	910-7	답	72	7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9	석현	910-4	답	81	81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10	석현	910-1	수	16	16	국유지	환경부			
11	석현	901-6	답	31	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12	석현	901-1	수	47	47	국유지	환경부			
13	석현	901-4	답	66	66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14	석현	900-5	수	88	88	국유지	환경부			
15	석현	900-6	수	26	26	국유지	환경부			
16	석현	900-7	수	126	126	국유지	환경부			
17	석현	1033-30	도	13	13	공유지	목포시			
18	석현	880-1	수	97	97	국유지	환경부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9	석현	879-2	수	193	193	국유지	환경부			
20	석현	867-1	수	208	208	국유지	환경부			
21	석현	869-1	수	6	6	국유지	환경부			
22	석현	866-3	수	115	115	국유지	환경부			
23	석현	866-5	수	14	14	국유지	환경부			
24	석현	941-17	답	6	6	국유지	국토교통부			
25	석현	919-14	수	2	2	공유지	목포시			
26	석현	1031-24	구	21	21	공유지	목포시			
27	석현	900-8	수	54	54	국유지	환경부			
28	석현	900-16	전	30	3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29	석현	866-9	전	1	1	공유지	목포시			
30	석현	866-17	전	3	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31	석현	866-16	전	9	9	공유지	목포시			
32	석현	910-5	답	27	27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목포시 고시 제2021-12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고하도유원지/휴양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목포시 달동 817-8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고하도유원지/휴양시설)사업【사업명 : 고하도유원지 휴양시설(숙박시설) 건립】의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7. 29.

목포시장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구분	고시 내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달동 817-81번지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고하도유원지/휴양시설)사업 ○ 사업명칭 : 고하도유원지 휴양시설(숙박시설) 건립	변경 없음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 당초 1,682㎡ ⇒ 변경 1,683.00㎡ (증 1㎡) ○ 건축면적 : 당초 380.09㎡ ⇒ 변경 442.01㎡ (증 61.92㎡) ○ 연 면 적 : 당초 1556.22㎡ ⇒ 변경 1,843.97㎡ (증 287.75㎡) ○ 금회사업 : 휴양시설(숙박시설) 3동	변경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동 수</th> <th colspan="2">건축면적(㎡)</th> <th colspan="2">연면적(㎡)</th> <th rowspan="2">건축물 용도</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당 초</th> <th>변 경</th> <th>당 초</th> <th>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1동</td> <td>120.05</td> <td>127.61</td> <td>502.65</td> <td>540.77</td> <td>숙박시설</td> <td></td> </tr> <tr> <td>2동</td> <td>97.74</td> <td>97.74</td> <td>403.56</td> <td>411.96</td> <td>숙박시설</td> <td></td> </tr> <tr> <td>3동</td> <td>162.30</td> <td>216.66</td> <td>650.01</td> <td>891.24</td> <td>숙박시설</td> <td></td> </tr> <tr> <td>합 계</td> <td>380.09</td> <td>442.01</td> <td>1556.22</td> <td>1,843.97</td> <td></td> <td></td> </tr> </tbody> </table>		동 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 용도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1동	120.05	127.61	502.65	540.77	숙박시설		2동	97.74	97.74	403.56	411.96	숙박시설		3동	162.30	216.66	650.01	891.24	숙박시설		합 계	380.09	442.01	1556.22	1,843.97		
	동 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 용도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1동		120.05	127.61	502.65	540.77	숙박시설																																		
2동	97.74	97.74	403.56	411.96	숙박시설																																				
3동	162.30	216.66	650.01	891.24	숙박시설																																				
합 계	380.09	442.01	1556.22	1,843.97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당초 이기정(목포시 양율로 41번길 40, 6동 301호), 배해경(목포시 만세로 19, 101호) ○ 변경 이기정(목포시 양율로 41번길 40, 6동 301호), 박혁(목포시 평화로 14번길 6, 101동 1005호)	변경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20. 10. 08. (착공신고필증 교부일). ○ 준공예정일 : 2022. 04.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분할측량 성과도에 따른 변경, 사업시행자 변경	변경																																							

구분	고 시 내 용	비고
항목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 열람 기간 : 2021. 03. 18. ~ 2021. 04. 01.(14일간) [열람공고 완료] ○ 열람 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270-3447(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 조서(변경)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등	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변경											
합계					7,894	1,683	1,682	1,683						
1	달동	817-81	817-81	전	745	745	745	745	목포시 양을로41번길 40, 6동 301호 (산정동,중앙 하이츠)	이기정	서유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 1가) (전남영업부)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당권	
2	달동	817-25	817-25	전	695	695	695	695	(당초) 목포시 만세로 19, 101호(양동,유달파크맨션)	배해경	서유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 1가) (전남영업부)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당권	
									(변경) 목포시 평화로 14번길 6, 101동 1005호 (상동, 성지비버리힐스)	박혁				
3	달동	817-29	817-29	임	14	14	14	14	(당초)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				
									(변경) 목포시 양을로41번길 40, 6동 301호 (산정동, 중앙하이츠)	이기정				
4	달동	802-28	802-30	전	54	41	40	41	(당초)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	서유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 1가) (전남영업부)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당권	
									(변경) 목포시 평화로 14번길 6, 101동 1005호 (상동, 성지비버리힐스)	박혁				
5	달동	800-30	800-39	도	6,386		188	82	82	목포시 평화로 14번길 6, 101동 1005호 (상동, 성지비버리힐스)	박혁	서유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 1가) (전남영업부)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당권
6			800-40											

여수시 고시 제2021-331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21. 7. 29.

여수시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공장증설용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
 - 가. 성 명
(기정) 롯데케미칼(주) 김교현, 이영준 (변경) 롯데케미칼(주) 신동빈, 김교현, 이영준, 황진구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14~16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가. 사업의 목적: 여수1공장 내의 부대설비 이동 등 공장증설부지 조성
 - 나. 사업의 개요: 163,172㎡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여수시 중흥동 135-8번지 일원
 - 나. 면 적: 163,172㎡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6. 6.30. ~ 2021. 6.30. (변경) 2016. 6.30. ~ 2021.12.31.
6.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변경없음): 게재생략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8. 국·공유지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9.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해당없음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게재생략
11. 실시계획승인조건(변경없음): 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1-33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 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7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유원지)’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9.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여수 도시계획시설(굴전유원지)사업
 - 나. 명 칭: 굴전 해양테마리조트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 기정: 67,372.8㎡(1공구 61,223.8㎡, 2공구 6,149.0㎡)
 - 변경: 67,181.4㎡(1공구 61,223.8㎡, 2공구 5,957.6㎡)
 - 나. 주요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주)여수예술랜드 박미숙
 -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1길 12-10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6.18.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없음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해당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유원지 조성계획(변경) 총괄표(경미한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67,372.8	100.0	기정
	67,181.4	100.0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시 설 부 지		44,917.9	66.7	기정
		44,971.9	66.9	변경
휴양시설 및 유희시설		12,552.0	18.6	기정
		12,426.0	18.5	변경
편익시설		25,507.9	37.9	기정
		25,667.9	38.2	변경
관리시설		6,858.0	10.2	기정
		6,878.0	10.2	변경
녹 지		22,454.9	33.3	기정
		22,209.5	33.1	변경

2) 시설별 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부지 면적 (㎡)	건축면적(㎡)				구성비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지상	지하			
총계	67,372.8	14,190.01	25,394.60	22,116.52	3,278.08	100.00		
	67,181.4	14,355.40	25,548.77	22,012.45	3,536.63	100.00		
시설부지	44,917.9					66.67		
	44,971.9					66.94		
휴양 시설 및 유희 시설	소계	12,552.0	3,636.03	5,732.72	5,732.72	-	18.63	
		12,426.0	3,636.03	5,732.72	5,732.72	-	18.50	
	101동~ 114동 빌라형 숙박시설	3,650.0	3,636.03	5,732.72	5,732.72	-	5.42	
		3,650.0	3,636.03	5,732.72	5,732.72	-	5.43	
	테마공원	8,902.0	-	-	-	-	13.21	
		8,776.0	-	-	-	-	13.06	
	고카트체험장	-	-	-	-	-	-	주차장옥상설치 (중복) L=350m B=4.0
	편 익 시 설	소계	25,507.9	10,504.48	19,612.38	16,334.30	3,278.08	37.86
25,667.9			10,650.83	19,747.51	16,211.19	3,536.32	38.21	
전시장(대)		4,250.0	4,238.15	10,038.62	8,515.81	1,522.81	6.31	
		4,250.0	4,238.15	10,038.62	8,515.81	1,522.81	6.33	

시설명	부지 면적 (㎡)	건축면적(㎡)				구성비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지상	지하			
전시장(소)	1,210.0	1,200.12	1,285.60	1,285.60	-	1.80		
	1,210.0	1,200.12	1,285.60	1,285.60	-	1.80		
주차장	7,483.6	2,490.64	6,450.98	4,936.28	1,514.70	11.11		
	7,483.6	2,422.21	6,447.27	4,707.83	1,739.44	11.14	면적변경	
수영장	1,430.0	1,422.89	-	-	-	2.12		
	1,430.0	1,422.89	-	-	-	2.13		
야영장	9,926.3	-	-	-	-	14.73		
	9,926.3	-	-	-	-	14.78		
근린생활시설	1,160.0	1,152.68	1,837.18	1,596.61	240.57	1.72		
	1,320.0	1,319.46	1,976.02	1,701.95	274.07	1.96	증축	
전망대	48.0	-	-	-	-	0.07		
	48.0	48.0	-	-	-	0.07		
관 리 시 설	소계	6,858.0	49.50	49.50	49.50	-	10.18	
		6,878.0	68.54	68.54	68.54	-	10.24	
	물탱크	50.0	49.50	49.50	49.50	-	0.07	
		61.0	60.40	60.40	60.40	-	0.09	면적변경
	도로	6,808.0	-	-	-	-	10.10	
		6,808.0	-	-	-	-	10.10	
	냉동창고	-	-	-	-	-	0.00	
		9.0	8.14	8.14	8.14	-	0.01	증축
	녹 지	22,454.9	-	-	-	-	33.33	
		22,209.5	-	-	-	-	33.06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고시 제2021-148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9.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서면 선평리 73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내용

위 치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적(㎡)		연 장 (폭)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순천시 서면 선평리 73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 소로1-106호, 소로1-500호) 개설공사	도로	중로 1-14호	13,340	13,206	L=648m (20m)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골든플리워)	(주)코람코 자산신탁 [대표정준희]	2020.6.30. ~ 2022.5.31.
			소로 1-106호	2,722	2,705.8	L=284m (9~10m)			
			소로 1-500호	934	931	L=91m (10m)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4.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총괄표

구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69 71	16,996 16,842.8	6 8	582 562	14	1,211 1,110.8	49	15,203 15,170
답	52	15,437 15,302	-	-	10	1,053 949	42	14,384 14,353
전	2	548 547	-	-	-	-	2	548 547
임	4	215	-	-	-	-	4	215
대	2	76 75	-	-	1	20	1	56 55
도	9 11	720 703.8	6 8	582 562	3	138 141.8	-	-

○ 중로1-14호선 총괄표

구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53	13,340 13,206	4	300	9	651	40	12,389 12,255
답	42	12,711 12,577	-	-	7	560	35	12,151 12,017
임	4	215	-	-	-	-	4	215
도	5	371	4	300	1	71	-	-
전	1	23	-	-	-	-	1	23
대	1	20	-	-	1	20	-	-

○ 중로1-14호선 편입토지조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합 계				13,340 13,206					
1	서면 선평리	50-3	답	326	326	정** (주)코람코자산 신탁	서면 선평리 118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2	서면 선평리	50-4	답	140	140	순천시		-	-	-
3	〃	50-5	답	18	18	순천시		-	-	-
4	〃	54-5	답	595	595	임**의 3인 (주)코람코자산 신탁	순천시 삼산로 81, 104동 1503호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5	〃	54-6	답	144	144	순천시		-	-	-
6	〃	55-7	답	370	370	허** (주)코람코자산 신탁	순천시 서면 강청안길 79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7	〃	55-8	답	168	168	순천시		-	-	-
8	〃	55-6	답	249	249	허** (주)코람코자산 신탁	순천시 서면 강청안길 79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9	〃	56-5	전	23	23	황** (주)코람코자산 신탁	순천시 서면 선평리 56-2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10	〃	70-8	대	20	20	순천시		-	-	-
11	〃	70-9	답	108	108	순천시		-	-	-
12	〃	70-10	답	59	59	순천시		-	-	-
13	〃	70-11	답	180 179	179	(주)코람코자산 신탁외인 (주)코람코자산 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14	서면 선평리	71-4	답	664	664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15	〃	73-1 73-3	답	1,696 1,065	1,199 1,065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16	〃	74-3	답	212	212	황**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면 선평리 118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17	〃	84-1	답	412	412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18	〃	85	답	559	559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19	〃	86-1	답	591	591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20	〃	87	답	336	336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21	〃	621-3	답	76	76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22	〃	621-4	답	220	220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23	〃	622-2	답	15	15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24	〃	622-5	답	2	2	허**	서면 선평리 572	-	-	-
25	〃	622-8	답	354	354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26	〃	622-9	답	371	371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27	〃	625-1	임	13	13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28	〃	625-48	임	2	2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29	〃	625-51	임	174	174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30	〃	625-52	임	26	26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31	〃	634-7	답	2	2	김** (주)코람코 자산신탁	전라남도 순천시 성동3길 8, 1508호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32	〃	648-1	답	4	4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33	〃	649-11	답	106	106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34	〃	649-12	답	346	346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35	〃	649-13	답	305	305	허**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면 선평리 542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36	〃	655-1	답	28	28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37	〃	657	답	304	125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38	〃	657-2	답	1,335	1,335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39	〃	658	답	432	2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40	〃	658-1	답	24	24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41	〃	659-1	답	1,102	11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42	〃	660-1	답	397	59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43	〃	660-2	답	313	313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44	〃	667-1	답	912	912	장** (주)코람코 자산신탁	순천시 가곡동 제4토지지구 9블락1롯데 시영A 1동812호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45	〃	668	답	857	857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46	〃	671	답	113	113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	-	-
47	〃	672-1	답	778	778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48	서면 선평리	780-65	도	104	104	기획재정부	-	-	-	-
49	〃	780-67	도	52	52	기획재정부	-	-	-	-
50	〃	780-69	도	64	64	기획재정부	-	-	-	-
51	〃	780-71	답	24	24	순천시	-	-	-	-
52	〃	780-72	도	71	71	순천시	-	-	-	-
53	〃	793	도	80	80	국토교통부	-	-	-	-

○ 소로1-106호선 총괄표

구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14	2,722	2	152	5	459	7	2,111
	15	2,705.8	3	134		459.8		2,112
답	8	1,922	-	-	3	392	5	1,530
		1,922				389		1,533
전	1	525	-	-	-	-	1	525
		524						524
대	1	56	-	-	-	-	1	56
		55						55
도	4	219	2	152	2	67	-	-
	5	204.8	3	134		70.8		

○ 소로1-106호선 편입 토지 조서

순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합 계			2,722 2,705.8					
1	90-1 90-2	답	649 283	283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2	91-8 91-10	답	703 392	257 260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3	105-14 105-16	대	63 55	56 55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4	105-15 105-17	전	1,457 524	525 524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5	609-3	답	36	36	순천시		-	-	-
6	610-3	답	322	322	순천시		-	-	-
7	610-13	답	448	448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	-	-
8	611-2	답	388	388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	-	-
9	612-1 612-6	답	168 31	34 31	순천시		-	-	-
10	612-4	답	154	154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	-	-
11	780-47 780-73	도	7,007 53	104 53	기획재정부		-	-	-
15	780-75		33	33					
12	809-2	도	48	48	국토교통부		-	-	-
13	1091-1	도	101 44.9	41 44.9	순천시		-	-	-
14	1091-2	도	26 25.9	26 25.9	순천시		-	-	-

○ 소로1-500호선 총괄표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5	934 931	1	130 128	-	-	4	804 803
답	4	804 803	-	-	-	-	4	804 803
도	1	130 128	1	130 128	-	-	-	-

○ 소로1-500호선 편입토지조서

순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합 계			934 931					
1	73-1 73-4	답	1,696 352	352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2	91-2 91-9	답	2,417 24	25 24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3	91-8 91-10	답	703 392	132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4	72-1	답	295	295	(주)코람코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5	780-47 780-77	도	7,007 128	130 128	기획재정부		-	-	-

순천시 고시 제2021-152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507, 소로3-50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0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9.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05-1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내용

종 류	명 칭	시설 및 규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m ²)	연 장(폭)	주 소	성 명	
도로	소로3-507호선 및 소로3-508호선 개설사업	계	3,677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 원가곡길75, 상가동 201호(가곡동, 양우내안애아파트)	순천시장 (도시과장) 주식회사 모던21(유병규, 김현장)	실시계획인가일 ~ 2022. 2. 28.
		소로3-507	2,076	L=348m (6m)			
		소로3-508	1,601	L=224m (6-8m)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4.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등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로 3-507	소로 3-508	계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내용
1	해룡면 복성리	204-1	답	659	189	-	189		국(국토교통부)			
2	해룡면 복성리	205-1	답	1,389	301	-	301		국(국토교통부)			
3	해룡면 복성리	206-1	답	2,678	241	-	241		국(국토교통부)			
4	해룡면 복성리	208-1	답	2,535	146	-	146		국(국토교통부)			
5	해룡면 복성리	581	답	1,884	34	-	34		국(국토교통부)			
6	해룡면 복성리	582-1	전	138	78	5	83		국(국토교통부)			
7	해룡면 복성리	583	전	1,147	-	91	91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45-1	박두영			
8	해룡면 복성리	584	전	598	-	3	3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45-1	박두영			
9	해룡면 복성리	586	전	1,101	-	4	4	순천시 남정동 297-1	정행자			
								순천시 남정동 297-1	김학수			
10	해룡면 복성리	587-1	중	368	21	-	21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587-1	대한예수장로회 성원교회 대표자정병주			
11	해룡면 복성리	589-8	대	92	1	-	1		국(국토교통부)			
12	해룡면 복성리	588-1	전	736	1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7, 105-404호(월계동, 첨단동아아파트)	김영옥			
								순천시 해룡면 상비길 34	김기수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88, 이동 208호	김광수			
해룡면 복성리	588-2	도	17	16	-	16	순천시 남정동216-15	양이덕				
							순천시 남정동216-15	김회운				
							순천시 남정동216-15	김희석				
							순천시 남정동216-15	김희일				
							순천시 남정동216-15	김희진				
해룡면 복성리	589-2	도	13	5	-	5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589-3	도	10	4	-	4	승주군 해룡면 복성리두번지	김종모				
해룡면 복성리	589-6	도	91	4	-	4		국(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로 3-507	소로 3-508	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해룡면 복성리	593-2	도	30	28	-	28		국(국토교통부)			
	해룡면 복성리	596	대	1,049	-	37	37	순천시 풍덕동 255-3 금호아파트1-1301호	조금순			
	해룡면 복성리	596-16	도	87	-	18	18		국(국토교통부)			
	해룡면 복성리	643-18	구	2,231	1	743	744		국(국토교통부)			
	해룡면 복성리	663	도	2,370	274	-	274		국(국토교통부)			
	해룡면 복성리	669	도	592	121	170	291		국(국토교통부)			
	해룡면 복성리	669-1	도	656	53	-	53		국(국토교통부)			
	해룡면 복성리	산24-11	임	674	217	-	217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56	김균수			
	해룡면 복성리	산24-14	임	1,111	282	-	282	순천시북문4길6-21(매곡동)	공화영			
	해룡면 복성리	산24-13	임	9,499	16	-	16		국(국토교통부)			
	해룡면 복성리	산24-6	구	48	43	-	43		국(국토교통부)			
	해룡면 복성리	산19-6	임	106		10	10		국(국토교통부)			
	해룡면 복성리	산19-5	임	64,682		520	52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합계				96,591	2,076	1,601	3,677					

순천시 공고 제2021-1750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호선, 대로3-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장천동 71-4번지 및 풍덕동 916-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21. 7. 29.

순천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장천동 71-4번지, 풍덕동 916-2번지 일원
- 2.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내용

종 류	명 칭	시설 및 규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연 장(폭)	주 소	성 명	
도로	대로3-3호선 및 대로3-4호선 개설사업	계	62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도로과장)	실시계획 인가일 ~ 2022. 12. 31.
		대로3-3	44	L=2,480 (25~36)			
		대로3-4	18	L=1,480 (25~32)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5. 열람장소 : 순천시청 도시과(☎ 061-749-631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등의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합 계				3,715	62						
1	순천시 장천동	71-4	도	469	15	순천시	순천시 장명로 30				
2	순천시 장천동	71-5	답	257	29	순천시	순천시 장명로 30				
3	순천시 풍덕동	916-2	철	2,989	18	국토교통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등의 세목조서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합 계				2,989	18						
1	순천시 풍덕동	916-2	철	2,989	18	국	국토교통부				

광양시 고시 제2021-280호

다압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신기~외압간 농로) 시행계획(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21. 7. 29.

광양시장

1. 사업의명칭 : 다압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신기~외압간 농로)
2. 사업의목적 : 농촌지역의 정주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3. 위 치 :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도사리 일원
4. 주요사업내용 : 농로 확포장공사 L=1.03km B=6.0m, 소교량 확장 1식 등
5. 사 업 비 : 1,423백만원(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2021. 5. ~ 2022. 5.(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8.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할 물건 : 다음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 변경 및 소유자 변경
9. 기타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 농업기반팀(☎061-797-28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합 계				89필지		52,100.3	9,109.3			
소계(1공구)				80필지		51,066	8,617			
1	광양	다압	신원	632	도	2,929	3		전라남도	
2	광양	다압	신원	1721	구	1,731.7	66		국(농림부)	
3	광양	다압	신원	신97-1	도	820	316		광양시	
4	광양	다압	신원	신97-2	도	1,730	35		전라남도	
5	광양	다압	신원	618-4	도		3		-	
6	광양	다압	신원	633-1	도		8		-	
7	광양	다압	신원	1704-15	답	27.8	1		광양시	
8	광양	다압	신원	1704-14	답	5	4		광양시	
9	광양	다압	신원	1704-25	답	24.4	24.4		부산광역시 연지동	유*복
10	광양	다압	신원	1711	도	6,592	882		국(농림부)	
11	광양	다압	신원	1710	구	12,559.3	106		국(농림부)	
12	광양	다압	신원	1720	구	1,123.9	54		국(농림부)	
13	광양	다압	신원	1715	도	5,333.9	581		국(농림부)	
14	광양	다압	신원	1702-4	답	126.2	126.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15	광양	다압	신원	1719	구	1,822	352		국(농림부)	
16	광양	다압	신원	1702-3	답	478.4	478.4		광양시 광영동	고*철
17	광양	다압	신원	1659-2	도	152	23		국(건설부)	
18	광양	다압	신원	575-63	전	11	11		하동군 적량면 동리	김*화
19	광양	다압	신원	575-21	도	180	176		광양시	
20	광양	다압	신원	575-62	전	17	17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김*희
21	광양	다압	신원	575-61	전	5	5		광양시 중동	이*식
22	광양	다압	신원	1659	도	793	793		국(건설부)	
23	광양	다압	신원	575-59	전	23	23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김*수
24	광양	다압	신원	575-60	전	2	2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김*수
25	광양	다압	신원	575-20	도	41	41		광양시	
26	광양	다압	신원	575-64	전	18	18		진주시 신안동	유*숙
27	광양	다압	신원	589	유	3,407	204		국(농수산부)	
28	광양	다압	신원	589-1	도	53	53		국(농수산부)	
29	광양	다압	도사	2-1	도	142	142		광양군	
30	광양	다압	도사	2-2	답	260	260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정*호
31	광양	다압	도사	1424	도	5,759	958		국(건설부)	
32	광양	다압	도사	1-2	전	56	56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정*주
33	광양	다압	도사	4-2	전	37	37		하동군 적량면 동리	김*원
34	광양	다압	도사	4-1	도	70	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김*원

번호	토지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35	광양	다압	도사	60-55	도	39	39		광양시	
36	광양	다압	도사	1-1	도	245	245		광양군	
37	광양	다압	도사	1-5	잡	132	132	히동군 히동읍 읍내리	정*호	
38	광양	다압	도사	5-6	전	6	6	히동군 히동읍 읍내리	김*원	
39	광양	다압	도사	5-7	전	4	4	히동군 히동읍 읍내리	김*원	
40	광양	다압	도사	5-4	전	23	23	다압면 신원리	류*룡	
41	광양	다압	도사	5-3	도	152	49		광양군	
42	광양	다압	도사	5-8	전	5	5	다압면 신원리	김*협	
43	광양	다압	도사	50-3	도	119	119		광양군	
44	광양	다압	도사	50-8	전	16	16	다압면 신원리	조*순	
45	광양	다압	도사	49-8	도	185	185	다압면 도사리	차*구	
46	광양	다압	도사	49-6	도	99	99	다압면 도사리	이*생	
47	광양	다압	도사	11-2	도	66	66		광양군	
48	광양	다압	도사	11-4	답	30	30	광양읍 칠성리	손*숙	
49	광양	다압	도사	11-5	답	2	2	광양읍 칠성리	손*숙	
50	광양	다압	도사	22-4	도	83	83		광양군	
51	광양	다압	도사	22-10	답	109	109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김*안	
52	광양	다압	도사	22-5	수	358	24		국(환경부)	
53	광양	다압	도사	23-10	전	48	48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최*영	
54	광양	다압	도사	23-9	도	56	32		전라남도	
55	광양	다압	도사	23-6	도	8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최*영	
56	광양	다압	도사	23-3	도	83	8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최*영	
57	광양	다압	도사	23-7	도	69	9		전라남도	
58	광양	다압	도사	23	전	222	222	의정부시 의정부동	장*진 외 5인	
59	광양	다압	도사	산141-2	도	99	17		국(간설교통부)	
60	광양	다압	도사	45-6	답	346	41		국(기획재정부)	
61	광양	다압	도사	45-1	도	656	13		전라남도	
62	광양	다압	도사	60-63	전	71	71	히동군 히동읍 읍내리	정*호	
63	광양	다압	도사	60-54	도	16	16	다압면 도사리	육*태	
64	광양	다압	도사	60-35	도	7	7		광양군	
65	광양	다압	도사	60-36	도	17	6		광양군	
66	광양	다압	도사	60-64	도	5	5		불명 외 2인	
67	광양	다압	도사	50-6	도	245	148		광양군	
68	광양	다압	도사	50-7	전	24	24	광양읍 칠성리	김*현	
69	광양	다압	도사	49-11	도	26	26		광양군	
70	광양	다압	도사	49-10	도	11	11	다압면 신원리	이*생	
71	광양	다압	도사	49-12	임	17	17	히동군 히동읍 읍내리	김*원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72	광양	다압	도사	48-2	도	132	1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최*영	
73	광양	다압	도사	48-3	전	36	36	다압면 신원리	문*숙	
74	광양	다압	도사	45-2	도	89	8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박*식	
75	광양	다압	도사	45-7	답	52	52	다압면 신원리	배*동	
76	광양	다압	도사	22-2	도	235	235		광양군	
77	광양	다압	도사	22-9	수	12	12		국(환경부)	
78	광양	다압	도사	45-5	수	65	5		국(환경부)	
79	광양	다압	도사	22-7	수	260	41		국(환경부)	
80	광양	다압	도사	22-3	답	156	46		국(기획재정부)	
소계(2공구)				9필지		1034.3	492.3			
1	광양	다압	신원	1707-2	답	72.3	72.3	태인동	박*순	
2	광양	다압	신원	657-5	답	118	118	다압면 신원리	강*규	
3	광양	다압	신원	654-29	답	4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강*규	
4	광양	다압	신원	654-30	천	4	4	다압면 신원리	이*생	
5	광양	다압	신원	654-28	전	3	3	양산시 덕계동	김*원	
6	광양	다압	신원	1707-1	답	151	27		광양시	
7	광양	다압	신원	1706	전	78	64		광양시	
8	광양	다압	신원	1705-2	전	241.5	76		광양시	
9	광양	다압	신원	1705-1	전	362.5	124		광양시	

함평군 고시 제2021-86호

함평 군관리계획(시장)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2번지 일원에 함평군 고시 1984. 11. 2.자로 결정·고시된 함평 군관리계획(시장)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1. 7. 29.

함평군수

[군관리계획(시장)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군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조서
 - 가. 유통 및 공급시설
 - 1) 시장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시장	소매시장 (농수산물유통시장)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2	9,251	증) 100.9	9,351.9	84. 11. 2.	

2) 시장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함평천지전통시장	• 면적 변경 9,251㎡ → 9,351.9㎡ (증: 100.9㎡)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군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조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시장)사업
 - 나. 명 칭 : 함평천지전통시장 판매시설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 기정 9,251㎡ ⇒ 변경) 9,351,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함평군수
 - 나.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기 정	변 경
- 착수예정일 : 2020. 1. 29. - 준공예정일 : 2021. 7. 28.	- 착수예정일 : 2020. 1. 29. - 준공예정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 계				9,351.9	9,351.9					
1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2	잡	9,351.9	9,351.9	함평군				

7. 관계도면 : 게재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미래전략실(061-320-15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신안군 고시 제2021-58호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신안군 고시 제2020-70호)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1. 7. 29.

신안군수

1.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다음
2.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신안군 경제에너지과 및 도시개발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경제에너지과(T.061-240-8463) 및 도시개발사업소(T.061-240-3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 리 지 역	계	243,767	증)20,589	264,356	100.0	
	계획관리지역	243,767	증)20,589	264,356	100.0	용도지역 (변경없음)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4	유각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은면 유각리 산239번지 일원	243,767	증)20,589	264,356	주거형(111,618m ²), 관광휴양형(152,738m ²)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변 경 사 유
14	자은면 유각리 산239번지 일원	264,356	· 급격히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고려하여 숙박시설,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 로(변경)

가)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 계	기정	26	4,919	40,731	4	2,345	16,653	19	2,539	23,918	3	35	160
	변경	23	5,027	50,099	2	771	7,813	11	3,931	40,097	10	325	2,189
광 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대 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 로	기정	2	448	6,674	-	-	-	2	448	6,674	-	-	-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변경	5	1,219	18,005	-	-	-	4	1,144	16,868	1	75	1,137	
소 로	기정	24	4,471	34,057	4	2,345	16,653	17	2,091	17,244	3	35	160
	변경	18	3,808	32,094	2	771	7,813	7	2,787	23,229	9	250	1,052

※ 구역 밖 1개소(소2-31) 포함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7	15	집산도로	288	산236-11임	광장 1호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7	15	집산도로	224	광장2호	유각리 924-8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160	광장 1호	소로 1-3호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8	15	집산도로	639	중로2-19	소로 1-89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9	15	집산도로	250	유각리 914-2전	유각리 939-1도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0	15	집산도로	31	중로 2-18	유각리 931-9전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	12-14	집산도로	75	중로 2-18	유각리 산237-4임	일반도로	
폐지	소로	1	87	10	국지도로	482	중로 2-1	경관녹지 1호	일반도로	
폐지	소로	1	88	10	국지도로	907	광장 1호	소로 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9	10	국지도로	940	중로 2-2	소로 1-4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89	10	국지도로	755	중로 2-18	유각리 산244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0	10	특수도로	16	소로 1-3	경관녹지 11호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1	90	10	특수도로	16	소로 1-89	유각리 산244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972	소로2-28	유각리 산237-4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31	8	국지도로	912	소로2-28	유각리 931-9전	일반도로	구역 밖
폐지	소로	2	69	8	국지도로	179	소로 1-1	유각리 939-1도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70	8	국지도로	151	소로 2-1	소로 1-1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71	8	국지도로	105	소로 2-2	소로 2-2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72	8	국지도로	101	소로 2-5	소로 2-5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73	8	국지도로	156	소로 1-2	소로 1-1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74	8	국지도로	151	소로 1-1	소로 2-1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75	8	국지도로	20	소로 1-1	소로 2-9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76	8	국지도로	21	소로 1-1	소로 2-9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77	8	국지도로	326	소로 1-2	소로 3-1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78	8	국지도로	92	소로 2-13	소로 2-9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79	8	국지도로	54	소로 2-13	소로 2-9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80	8	국지도로	30	소로 2-13	소로 2-9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81	8	국지도로	198	소로 1-2	소로 2-9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82	8	국지도로	40	소로 2-13	소로 2-15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83	8	국지도로	259	소로 2-13	소로 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4	8	국지도로	187	소로 1-3	소로 1-3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85	8	특수도로	21	중로 2-1	소로 2-1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86	8	국지도로	250	유각리 914-7답	유각리 939답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87	8	국지도로	169	유각리 산233-2임	유각리 939답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88	8	국지도로	109	유각리 914-2전	유각리 914-2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89	8	국지도로	112	유각리 산236-7임	유각리 914-2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0	8	국지도로	1,048	광장2호	유각리 산236-7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78	6	특수도로	10	중로 2-1	소로 2-9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79	4	특수도로	12	소로 1-1	소로 2-3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80	4	특수도로	13	소로 1-1	소로 2-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81	4	특수도로	22	유각리 940답	유각리 산233-2임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82	4	특수도로	28	유각리 산233-4임	유각리 914-6답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83	4	특수도로	21	유각리 산236-7임	유각리 산236-7임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84	4	특수도로	28	유각리 산236-7임	유각리 산236-7임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85	4	특수도로	34	유각리 산236-7임	유각리 산236-8임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86	4	특수도로	50	유각리 산236-7임	유각리 산236-7임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87	4	특수도로	32	광장2호	유각리 산236-7임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88	4	특수도로	21	유각리 산236-7임	유각리 산236-7임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89	4	특수도로	14	유각리 924-8전	유각리 산236-7임	보행자 전용도로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2-17호선	중로 2-17호선	· 선형변경 - L= 288m → 224m (감) 6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중로 2-18호선	중로 2-18호선	· 선형변경 - L= 160m → 639m (증) 479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	중로 2-19호선	· 신설 - L= 250m, B= 15m	· 주거단지 내 도로신설
-	중로 2-20호선	· 신설 - L= 31m, B= 15m	· 관광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 3-10호선	· 신설 - L= 75m, B= 12m-14m	· 백길해수욕장 진입을 위하여 도로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87호선	-	· 폐지 - L= 482m, B= 10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1-88호선	-	· 폐지 - L= 907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1-89호선	소로 1-89호선	· 선형변경 - L= 940m → 755m (갑) 185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1-90호선	소로 1-90호선	· 기·종점 명칭변경	· 군관리계획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종점 명칭 변경
소로 2-31호선	소로 2-31호선	· 선형변경 - L= 972m → 912m (갑) 60m	· 관광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소로 2-69호선	-	· 폐지 - L= 179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70호선	-	· 폐지 - L= 151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71호선	-	· 폐지 - L= 105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72호선	-	· 폐지 - L= 101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73호선	-	· 폐지 - L= 156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74호선	-	· 폐지 - L= 151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75호선	-	· 폐지 - L= 20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76호선	-	· 폐지 - L= 21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77호선	-	· 폐지 - L= 326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78호선	-	· 폐지 - L= 92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79호선	-	· 폐지 - L= 54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80호선	-	· 폐지 - L= 30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81호선	-	· 폐지 - L= 198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82호선	-	· 폐지 - L= 40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83호선	-	· 폐지 - L= 259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2-85호선	-	· 폐지 - L= 21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	소로 2-86호선	· 신설 - L= 250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도로신설
-	소로 2-87호선	· 신설 - L= 169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도로신설
-	소로 2-88호선	· 신설 - L= 109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도로신설
-	소로 2-89호선	· 신설 - L= 112m,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도로신설
-	소로 2-90호선	· 신설 - L= 1,048, B= 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도로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78호선	-	· 폐지 - L= 10m, B= 6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79호선	-	· 폐지 - L= 12m, B= 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80호선	-	· 폐지 - L= 13m, B= 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	소로 3-81호선	· 신설 - L= 22m, B= 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 3-82호선	· 신설 - L= 28m, B= 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 3-83호선	· 신설 - L= 21m, B= 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 3-84호선	· 신설 - L= 28m, B= 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 3-85호선	· 신설 - L= 34m, B= 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 3-86호선	· 신설 - L= 50m, B= 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 3-87호선	· 신설 - L= 32m, B= 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 3-88호선	· 신설 - L= 21m, B= 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 3-89호선	· 신설 - L= 14m, B= 4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단지 내 보행자도로 신설

2) 주차장(변경)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9,180	증2,068	11,248	-	
폐지	28	주차장	유각리 914-6답	366	감366	-	신안군 고시 제2020-36호 (2020.6.11)	노외 주차장
폐지	29	주차장	유각리 산236-7임	2,875	감2,875	-	"	노외 주차장
폐지	30	주차장	유각리 산236-7임	307	감307	-	"	노외 주차장
변경	31	주차장	유각리 931전 일원	5,183	감2,771	2,412	"	노외 주차장
기정	32	주차장	유각리 산244임	449	-	449	"	노외 주차장
신설	34	주차장	유각리 941답 일원	-	증3,704	3,704	-	노외 주차장
신설	35	주차장	유각리 931-12전	-	증4,683	4,683	-	노외 주차장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8	주차장	· 폐지 - A= 366㎡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29	주차장	· 폐지 - A= 2,875㎡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30	주차장	· 폐지 - A= 307㎡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31	주차장	· 변경 - A= 5,183㎡ → 2,412㎡, 감)2,771㎡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변경
34	주차장	· 신설 - A= 3,704㎡	·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계획함
35	주차장	· 신설 - A= 4,683㎡	·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계획함

나. 공간시설(변경)

1) 광 장(변경)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	유각리 236-7입	1,842	감)1,058	784	신안군 고시 제2020-36호 (2020.6.11)	위치 변경

나)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광장	· 변경 - A= 1,842㎡ → 784㎡ 감)1,058㎡	·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교차점 광장 변경

2) 공 원(변경)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5,521	감)5,521	-	-	
폐지	13	공 원	소공원	유각리 산236-7	3,986	감)3,986	-	신안군 고시 제2020-36호 (2020.6.11)	
폐지	14	공 원	소공원	유각리 914-6답	206	감)206	-	"	
폐지	15	공 원	소공원	유각리 914-2전	657	감)657	-	"	
폐지	16	공 원	소공원	유각리 산236-7	365	감)365	-	"	
폐지	17	공 원	소공원	유각리 산236-7	307	감)307	-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	공원	· 폐지 - A= 3,986㎡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14	공원	· 폐지 - A= 206㎡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15	공원	· 폐지 - A= 657㎡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16	공원	· 폐지 - A= 365㎡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17	공원	· 폐지 - A= 307㎡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3) 녹 지(변경)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80,322	감)80,322	-	-
폐지	1	녹 지	경관녹지	유각리 산230-4임	22,808	감)22,808	-	신안군 고시 제2020-36호 (2020.6.11)	
폐지	2	녹 지	경관녹지	유각리 914-6답	3,116	감)3,116	-	"	
폐지	3	녹 지	경관녹지	유각리 924-3임	669	감)669	-	"	
폐지	4	녹 지	경관녹지	유각리 924-8전	256	감)256	-	"	
폐지	5	녹 지	경관녹지	유각리 산236-9임	213	감)213	-	"	
폐지	6	녹 지	경관녹지	유각리 산238임	1,008	감)1,008	-	"	
폐지	7	녹 지	경관녹지	유각리 933답	47	감)47	-	"	
폐지	8	녹 지	경관녹지	유각리 산239임	39,403	감)39,403	-	"	
폐지	9	녹 지	경관녹지	유각리 786-31답	4,124	감)4,124	-	"	
폐지	10	녹 지	경관녹지	유각리 산242-1임	1,596	감)1,596	-	"	
폐지	11	녹 지	경관녹지	유각리 산244임	7,082	감)7,082	-	"	

나)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 폐지, A= 22,808㎡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2	녹지	· 폐지, A= 3,116㎡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3	녹지	· 폐지, A= 669㎡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4	녹지	· 폐지, A= 256㎡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5	녹지	· 폐지, A= 213m ²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 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6	녹지	· 폐지, A= 1,008m ²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 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7	녹지	· 폐지, A= 47m ²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 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8	녹지	· 폐지, A= 39,403m ²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 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9	녹지	· 폐지, A= 4,124m ²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 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10	녹지	· 폐지, A= 1,596m ²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 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11	녹지	· 폐지, A= 7,082m ²	·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녹지 용지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

다.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변경)

가)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5	하수 처리시설	유각리 786-31답	1,032	증318	1,350	신안군 고시 제2020-36호 (2020.6.11)	

나)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5	하수 처리시설	· 변경 - A= 1,032m ² → 1,350m ² 증318m ²	· 약취우려가 있는 하수처리장을 관공시설에서 이격하여 계획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1) 주거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A 단독 주택	합 계	기정	41,080	-	-	기정	41,080	
		변경	38,406	-	-	변경	38,406	
	A1	기정	3,078	1	유각리 939답	기정	694	
				2	유각리 940-1답 일원		469	
				3	유각리 941답 일원		425	
				4	유각리 941답 일원		37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5	유각리 941답 일원		355		
				6	유각리 939답 일원		355		
				7	유각리 939답		405		
		변경	2,180	1	유각리 939답	변경	435		
				2	유각리 939답 일원		430		
				3	유각리 940답 일원		430		
				4	유각리 940답		430		
				5	유각리 940답 외 1필지		455		
		A2	기정	2,012	1	유각리 939답	기정	331	
					2	유각리 943답 일원		325	
					3	유각리 940답 일원		319	
					4	유각리 940답 일원		343	
					5	유각리 940-1답 일원		349	
					6	유각리 938답 일원		345	
	변경		4,476	1	유각리 939답 일원	변경	491		
				2	유각리 940-1답 일원		491		
				3	유각리 935답 일원		452		
				4	유각리 935답 일원		448		
				5	유각리 935답 일원		448		
				6	유각리 935답 일원		492		
				7	유각리 940-1답 일원		557		
				8	유각리 940-1답 일원		551		
				9	유각리 938답 일원		546		
	A3	기정	2,246	1	유각리 938답 일원	기정	375		
				2	유각리 940-1답 일원		370		
				3	유각리 940답		363		
				4	유각리 산233-2임 일원		365		
				5	유각리 산233-2임 일원		383		
				6	유각리 산233-2임 일원		390		
변경		781	1	유각리 936답 일원	변경	78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A 단독 주택	A4	기정	2,602	1	유각리 940-1답 일원	기정	324
				2	유각리 940-1답 일원		324
				3	유각리 935답 일원		323
				4	유각리 935답 일원		317
				5	유각리 산233-2임 일원		369
				6	유각리 산233-2임 일원		319
				7	유각리 산233-2임 일원		319
				8	유각리 산233-2임 일원		307
	변경	1,700	1	유각리 935답 일원	변경	440	
			2	유각리 935답 일원		420	
			3	유각리 산233-2임 일원		420	
			4	유각리 산233-2임 일원		420	
	A5	기정	1,920	1	유각리 940-1답 일원	기정	318
				2	유각리 935답 일원		324
				3	유각리 935답 일원		318
				4	유각리 935답 일원		318
				5	유각리 935답 일원		324
				6	유각리 937임 일원		318
		변경	1,823	1	유각리 914-6답 일원	변경	405
				2	유각리 914-6답		400
	A6	기정	366	1	유각리 산233-4임 일원	기정	366
				1	유각리 914-6답 일원		457
		변경	2,071	2	유각리 914-2전 일원	변경	400
				3	유각리 914-2전 일원		400
				4	유각리 914-2전 일원		618
				4	유각리 914-1답 일원		400
				5	유각리 산236-7임 일원		414
				1	유각리 산233-4임 일원		320
	A7	기정	1,968	2	유각리 산233-4임 일원	기정	332
				3	유각리 산233-4임 일원		332
				4	유각리 914-6답 일원		332
				5	유각리 914-6답		332
6				유각리 914-6답	320		
1				유각리 산236-7임	변경		485
2		유각리 산236-7임	480				
3		유각리 산236-7임	480				
4		유각리 산236-7임	480				
5		유각리 산236-7임 일원	480				
6		유각리 산236-7임 일원	480				
7		유각리 산236-7임 일원	480				
8		유각리 산236-7임	514				
A8		기정	3,158	9	유각리 산236-7임	기정	532
	1			유각리 914-6답	348		
	2			유각리 914-6답 일원	351		
	3			유각리 914-2전	352		
4	유각리 914-2전	35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	
A 단독 주택				5	유각리 914-2전 일원	353	
				6	유각리 산236-7임	353	
				7	유각리 산236-7임	353	
				8	유각리 산236-7임	353	
				9	유각리 산236-7임	342	
				1	유각리 산236-7임	662	
		변경	3,970	2	유각리 산236-7임	663	
				3	유각리 산236-7임	662	
				4	유각리 산236-7임	662	
				5	유각리 산236-7임	663	
				6	유각리 산236-7임	658	
				기정	2,097	1	유각리 914-2전
	2	유각리 914-2전 일원	347				
	3	유각리 산236-7임 일원	357				
	4	유각리 산236-7임 일원	347				
	5	유각리 산236-7임 일원	347				
	6	유각리 산236-7임 일원	356				
	A9	변경	4,767	1	유각리 산236-7임	596	
				2	유각리 산236-7임	596	
				3	유각리 산236-7임	596	
				4	유각리 산236-7임	595	
		기정	2,885	5	유각리 산236-7임	596	
				6	유각리 산236-7임	596	
				7	유각리 산236-7임	596	
				8	유각리 산236-7임	596	
	A10	기정	2,885	1	유각리 산236-7임	312	
				2	유각리 산236-7임	317	
				3	유각리 산236-7임	320	
				4	유각리 산236-7임	321	
				5	유각리 산236-7임	333	
				6	유각리 산236-7임	329	
		변경	3,418	7	유각리 산236-7임	320	
				8	유각리 산236-7임	320	
				9	유각리 산236-7임	313	
				1	유각리 산236-7임 일원	581	
				2	유각리 산236-7임 일원	663	
				3	유각리 산236-7임 일원	606	
	A11	기정	1,229	4	유각리 산236-7임	511	
				5	유각리 산236-7임	561	
				6	유각리 산236-7임	496	
1				유각리 산236-7임	307		
변경	674	2	유각리 산236-7임	308			
		3	유각리 산236-7임	307			
			4	유각리 산236-7임	307		
			1	유각리 산236-7임	67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	
A 단독 주택	A12	기정	897	1	유각리 산236-7임	기정	483
				2	유각리 산236-7임		414
		변경	5,917	1	유각리 924-1전 일원	변경	482
				2	유각리 924-1전 일원		482
				3	유각리 산236-10임 일원		540
				4	유각리 산236-10임 일원		475
				5	유각리 924-11전 일원		473
				6	유각리 9247-11전 일원		473
				7	유각리 924-15전 일원		473
				8	유각리 산236-3임 일원		473
				9	유각리 산236-3임 일원		473
				10	유각리 산236-3임 일원		521
				11	유각리 산236-7임		588
				12	유각리 산236-7임		464
	A13	기정	1,813	1	유각리 산236-7임	기정	375
				2	유각리 산236-7임		363
				3	유각리 산236-7임		362
				4	유각리 산236-7임		363
				5	유각리 산236-7임		350
		변경	2,218	1	유각리 산236-7임	변경	639
				2	유각리 산236-7임		547
				3	유각리 산236-7임		494
	A14	기정	1,783	1	유각리 산236-7임	기정	357
				2	유각리 산236-7임		356
				3	유각리 산236-7임		356
				4	유각리 산236-7임		357
				5	유각리 산236-7임		357
		변경	-	1	유각리 산236-7임	변경	-
				2	유각리 산236-7임		-
				3	유각리 산236-7임		-
				4	유각리 산236-7임		-
				5	유각리 산236-7임		-
	A15	기정	2,621	1	유각리 산236-7임	기정	330
				2	유각리 산236-7임		326
				3	유각리 산236-7임		330
				4	유각리 산236-7임		324
				5	유각리 산236-7임		324
				6	유각리 산236-7임		330
				7	유각리 산236-7임		330
				8	유각리 산236-7임		32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A 단독 주택		변경	-	1	유각리 산236-7임	변경	-
				2	유각리 산236-7임		-
				3	유각리 산236-7임		-
				4	유각리 산236-7임		-
				5	유각리 산236-7임		-
				6	유각리 산236-7임		-
				7	유각리 산236-7임		-
				8	유각리 산236-7임		-
	A16	기정	4,534	1	유각리 산236-7임	기정	338
				2	유각리 산236-7임		330
				3	유각리 산236-7임		330
				4	유각리 산236-7임		330
				5	유각리 산236-7임		328
				6	유각리 산236-7임		378
				7	유각리 산236-7임		512
				8	유각리 산236-7임		329
				9	유각리 산236-7임		330
				10	유각리 산236-7임		330
				11	유각리 산236-7임		330
				12	유각리 산236-7임		330
				13	유각리 산236-7임 일원		339
		변경	-	1	유각리 산236-7임	변경	-
				2	유각리 산236-7임		-
				3	유각리 산236-7임		-
				4	유각리 산236-7임		-
				5	유각리 산236-7임		-
				6	유각리 산236-7임		-
				7	유각리 산236-7임		-
				8	유각리 산236-7임		-
				9	유각리 산236-7임		-
				10	유각리 산236-7임		-
				11	유각리 산236-7임		-
				12	유각리 산236-7임		-
				13	유각리 산236-7임 일원		-
	A17	기정	2,619	1	유각리 산236-7임	기정	355
2				유각리 924-5임 일원	365		
3				유각리 924-16임 일원	398		
4				유각리 924-16임 일원	379		
5				유각리 산236-7임 일원	374		
6				유각리 산236-7임 일원	374		
7				유각리 산236-10임	37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A 단독 주택		변경	-	1	유각리 산236-7임	변경	-
				2	유각리 924-5임 일원		-
				3	유각리 924-16임 일원		-
				4	유각리 924-16임 일원		-
				5	유각리 산236-7임 일원		-
				6	유각리 산236-7임 일원		-
				7	유각리 산236-10임		-
	A18	기정	3,252	1	유각리 산236-10임 일원	기정	361
				2	유각리 산236-7임 일원		362
				3	유각리 산236-7임 일원		361
				4	유각리 산236-7임 일원		362
				5	유각리 산236-3임 일원		361
				6	유각리 산236-3임 일원		361
				7	유각리 산236-3임 일원		363
				8	유각리 산236-7임		363
				9	유각리 산236-7임		358
		변경	-	1	유각리 산236-10임 일원	변경	-
				2	유각리 산236-7임 일원		-
				3	유각리 산236-7임 일원		-
				4	유각리 산236-7임 일원		-
				5	유각리 산236-3임 일원		-
				6	유각리 산236-3임 일원		-
				7	유각리 산236-3임 일원		-
				8	유각리 산236-7임		-
				9	유각리 산236-7임		-

2) 상업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B 근린 생활시설	B1	기정	4,295	-	유각리 산236-7임 일원	기정	4,295
		변경	1,580	-	유각리 산236-7임	변경	1,580

3)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		
G 주차장	소 계	기정	3,548	-	-	기정	3,548	
		변경	3,704	-	-	변경	3,704	
	G1	기정	366	-	유각리 914-6답일원	기정	366	
		변경	3,704	-	유각리 941답 일원	변경	3,704	
G 주차장	G2	기정	2,875	-	유각리 산236-7임	기정	2,875	
		변경	-	-	유각리 산236-7임	변경	-	
	G3	기정	307	-	유각리 산236-7임	기정	307	
		변경	-	-	유각리 산236-7임	변경	-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기정	59,764	-	-	기정	59,764	
		변경	75,717	-	-	변경	75,717	
C 숙박시설	C1	기정	40,518	1	유각리 산237-5임 일원	기정	40,518	
		변경	54,985	1	유각리 924-3임 일원	변경	2,739	
				2	유각리 933전 일원		52,246	
D 숙박시설	소 계	기정	9,935	-	-	기정	9,935	
		변경	9,680	-	-	변경	9,680	
	D1	기정	1,267	1	유각리 산243-1임 일원	기정	439	
				2	유각리 산243-1임 일원		400	
				3	유각리 산243-1임 일원		428	
		변경	1,258	1	유각리 산243-1임 일원	변경	430	
				2	유각리 산243-1임 일원		400	
				3	유각리 산243-1임 일원		428	
	D2	기정	1,523	1	유각리 산244임	기정	323	
				2	유각리 산244임		400	
				3	유각리 산244임		400	
		변경	1,277	1	유각리 산244임	변경	437	
				2	유각리 산244임		420	
				3	유각리 산244임		420	
	D3	2,568	1	유각리 산244임	426			
			2	유각리 산244임	330			
			3	유각리 산244임	330			
			4	유각리 산244임	324			
5			유각리 산244임	330				
6			유각리 산244임	310				
7			유각리 산244임	51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D 숙박시설	D4	1,707		1	유각리 산244임	348		
				2	유각리 산244임	341		
				3	유각리 산244임	341		
				4	유각리 산244임	341		
				5	유각리 산244임	336		
	D5	2,870		1	유각리 산244임	412		
				2	유각리 산244임	400		
				3	유각리 산244임	400		
				4	유각리 산244임	400		
				5	유각리 산244임	400		
				6	유각리 산244임	400		
				7	유각리 산244임	458		
	E 문화시설	E1	6,376		-	유각리 산244임	6,376	
F 운동시설	F1	기정	2,935	-	유각리 산244임	기정	2,935	
		변경	3,442	-	유각리 산244임	변경	3,442	
I 관리시설	I1	1,234		-	유각리 786-31답	1,234		신설

2)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합 계		기정	6,664	-	-	기정	6,664	
		변경	8,894	-	-	변경	8,894	
G 주차장	소계	기정	5,632	-	-	기정	5,632	
		변경	7,544	-	-	변경	7,544	
	G2	2,412		-	유각리 931전 일원	2,412		신설
	G3	4,683		-	유각리 931-12전 일원	4,683		신설
	G4	기정	5,183	-	유각리 산237-3임 일원	기정	5,183	
		변경	449	-	유각리 산244임	변경	449	
	G5	기정	449	-	유각리 산244임	기정	449	
		변경	-	-	-	변경	-	
	H 하수 처리시설	H1	기정	1,032	-	유각리 산242-1임 일원	기정	1,032
변경			1,350	-	유각리 786-31답	변경	1,35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1)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단독 주택	기정 (A1-A18) 변경 (A1-A13)	용도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중 다세대 주택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수)	• 4층 이하		
		배치	• 남향위주의 배치로 조망권 확보 권장		
		형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2)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 근린 생활 시설	B1	용도	권장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수)	기정	• 7층 이하	
			변경	• 4층 이하	
		배치	• 남향위주의 배치로 조망권 확보 권장		
		형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3)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G 주차장	기정 (G1-G3) 변경 (G1)	용도	허용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층 수)	• 1층 이하	
		배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

1) 관광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 숙박 시설	기정 (C1) 변경 (C1-C2)	용도	권장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광숙박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허용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수)	• 10층 이하	
		배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 숙박 시설	D1~D5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수)	• 4층 이하	
		배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E 문화 시설	E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수)	• 4층 이하	
		배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F 운동 시설	F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층 수)	• 4층 이하	
		배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I 관리 시설	신설 (H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8호 참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층 수)	• 1층 이하	
		배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2)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G 주차장	기정 (G4-G5) 변경 (G2-G4)	용도	허용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층 수)	• 1층 이하	
		배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채	• 신인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H 하수 처리 시설	H1	용도	허용	•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층 수)	• 1층 이하	
		배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채	• 신인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